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정부지원 시책

2019. 8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콜센터 1670-7072 ask16707072@korea.kr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정부지원 시책

2019. 8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정부지원 시책

2019. 8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콜센터 1670-7072 ask16707072@korea.kr

목 차

1 품목 확인 및 종합 정보 제공

①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콜센터 1670-7072)

1.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1
--------------------------	---

② 전략물자 관리원 (콜센터 6000-6400)

2. 전략물자 확인 및 일본 수출통제제도 정보제공	4
-----------------------------------	---

2 수급애로 해결 지원

① 물량 확보

3. 보세구역 활용 자재비축 및 신속통관 지원	5
4. 수입처 다변화 지원	6
5.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8
6.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지원	10
7.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11
8.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지원 특별 보증	14
9.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15
10.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보증	17

② 대체수입처 확보

11. 대체 수입처 발굴 조사 및 현지 활동 지원	18
12. 국내수입자 특별보증, 대체 수입처 발굴 특별보험	20
13. 대체시장 개척지원, 해외기업 인수금융 지원	21
14. 수입처 다변화 지원	22
15. 해외물류센터 지원	24
16. 수출바우처 지원	26

17. 일본 ICP기업 활용 지원	28
18. 분업적 협력을 위한 피칭데이	30
19.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31
20.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지원	33
21.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34
22.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지원 특별 보증	37
23.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38
24.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보증	40

③ 생산설비 확충

25. 특별연장근로 인가	41
2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 단축	42
27.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Fast Track 지원	43
28. 임대전용 산업단지 우선 입주	44
29.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 지원	46
30.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 지원	47
31. 사업경쟁력강화 지원 자금	49
32.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50
33. 연구개발 시설투자 촉진 자금 지원	52
34.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보증	53
35.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54
36. 신성장기반자금 지원	56
37. 나노팹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추진 지원	57
38. 해외 기업 인수[M&A] 지원	58

③ 기술개발 지원

39.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	59
40. 나노팹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추진 지원	60
41. 소재부품기술개발	61
4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63
43. 강소기업 100개 육성	64
44. 신뢰성테스트 지원	65

45. 신뢰성 평가센터	67
46. 소재 종합솔루션센터	69
47. 과기원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	70
48.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71
49. 신성장기반자금 지원	72
50. 특허 기반 기술개발(IP-R&D) 전략, 지식재산권 사업화 등 지원	73
51.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75
52. 연구개발 운전 자금 지원	76
53. 연구개발 시설투자 촉진 자금 지원	78

4 피해기업 지원

① 세정 등 지원

54. 피해기업 중소기업 세정지원	79
55.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환급 등 지원	81
56. 기업부설 연구소 지방세 감면	82
57. 지방세 납기연장, 세무조사 연기	83

② 금융지원

58.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84
59.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 지원	85
60.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87
61.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88
62.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90
63.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례보증	93
64. 영세 관광사업자 신용보증	94
6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95

[참고1]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현장지원반 핫라인

[참고2] 전략물자 전문판정 신청 방법 안내

[참고3]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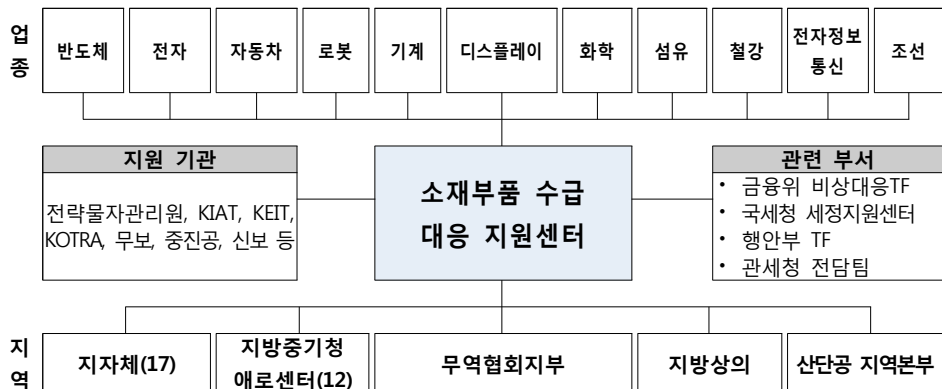
[별첨1] 소재·부품산업 대상업종(산업은행)

1 품목 확인 및 종합 정보 제공 ①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1.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 (목적)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 우리 기업의 수급 애로 원스톱 해결
- (구성) 7.22(월)부터 정부부처, 유관기관, 협·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가동
 - 품목, 기능(무역·금융·환경·R&D·고용), 지역 담당으로 역할 분담, 체계적 운영중
 - * 산업부·기재부·중기부 등 11개 정부부처, KOTRA·무역보험공사·대한상의·반도체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21개 유관기관 등 32개 기관
- (기능)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보제공, 기업 애로 조사 및 지원
 - ① 정보 제공 : 관련품목,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 정부 지원시책 등
 - ② 기업 실태 조사 및 애로 파악 : 품목별로 관련기업 수급 실태 및 애로 조사
 - ③ 수급애로 지원 :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 생산설비 신·증설
 - ④ 피해기업 지원 : 피해기업 발생시 금융·세제·자금 등 신속 지원
- (협력체계)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중심으로 업종·지역별 및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핫라인 유지 및 상시 협력

[업종·지역별·관계기관 협력 네트워크]



[한눈에 보는 정부 지원 시책]

① 품목 확인 및 종합 정보 제공

- ①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콜센터 1670-7072)
- ② 전략물자관리원 (콜센터 6000-6400)
 - *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 (<https://japan.kosti.or.kr>)
 - * 일본수출 규제품목 해당여부, 일본 수출규제 제도 내용, CP기업 정보, 정부지원 시책 등 종합 서비스

② 수급으로 해결 지원

① 물량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 보세구역 활용 자재비축 및 신속통관 지원 · (기재부) 할당관세 · (중기부·금융위) 금융지원
② 대체수입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 대체수입처 발굴 지원 · (무역보험공사) 수입자금 특별보증, 특별보험 · (중기부·금융위) 금융지원
③ 생산설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부) 근로 유연성 제고(특별연장근로, 재량근로) · (환경부)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Fast-track 및 신속출시 지원 · (국토부) 산업단지 우선 입주 및 조성 지원 · (중기부·금융위) 금융지원

③ 기술개발 지원

- ① (과기·산업·중기부) 추경(2,732억원) 지원
 - * (과기부)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31.5억원)
 - * (산업부) 소재부품기술개발(650억원), 월드클래스 300(53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350억원), 제조장비실증(320억원)
신뢰성테스트 지원(220억원)
 - * (중기부) 혁신형기술개발(217억원), 개발기술사업화 지원(융자, 2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융자, 300억원)
- ② (과기·산업·중기부) 2020년 이후 기술개발 지원 확대
 - * 2020년 예산 확정 후 부처별 기술개발 절차에 따라 추진

- ③ (특허청) 특허 기반 기술개발(IP-R&D) 전략, 지식재산권 사업화 등 지원
- ④ (기재부) R&D 세제 지원 확대
- ⑤ (중기부) 연구인력 채용 및 양성지원
 - *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 계약학과
- ⑥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예외 인정 및 공동 행위 인가
- ⑦ (중기부·금융위) 금융 지원

4] 피해기업 지원

- ① (행안부·국세청·관세청) 국세, 관세, 지방세 세정 지원
- ② (고용부)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③ (중기부·금융위) 금융 지원
 - *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 1년 연장

□ 문의처 : (콜센터) ☎1670-7072, ask16707072@korea.kr,
<https://japan.kosti.or.kr>

[참고] 중기부·금융위 금융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관	규모	수급애로			R&D	피해기업 지원
			물량 확보	대체 수입처 확보	생산 시설 신·증설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산은	2.5조원	○	○			○
긴급경영안정자금	산은, 기은, 중진공	4,240억원	○	○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산은, 기은	3년간 10조원	○	○	○		○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산은	1조원			○		○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산은	3년간 2.5조원			○	○	○
연구개발 운전자금	기은	2,000억원				○	○
수입다변화 지원	수은	1조원	○	○			○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촉진 지원	수은	3년간 2.5조원			○	○	○
신성장 기반 기금	중진공	4,500억원			○		○
개발기술 사업화	중진공	880억원				○	○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기보, 신보, 지역신보	2.63조원	○	○	○		○

1 품목 확인 및 종합 정보 제공 ② 전략물자 관리원

2. 전략물자 확인 및 일본 수출통제 제도 정보제공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일본 수출통제제도 정보 및 규제 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기업

□ 지원내용

① 전략물자 확인

-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품목이 규제품목(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서비스 제공

구분	자가판정	전문판정
판정방법	Yestrade(www.yestrade.go.kr) 접속 후 판정 가능	
판정주체	판정자(해당 업체)	전략물자관리원 전문가
판정 소요시간	실시간 확인 가능	약 15일 이내
비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수입하려는 품목의 특성과 기술사양 등의 확인 필요	

② 일본 수출통제제도 정보제공 (<https://japan.kosti.or.kr>)

-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 구축·운영
 - 일본 수출규제 품목 및 CP기업 검색서비스 제공
 - 일본 수출통제제도 관련자료 지속 업데이트



- 정보제공 설명회 강화
 - 일본 수출통제 특별 교육과정 편성

□ 문의처 : 전략물자관리원 고객센터 ☎ 02-6000-6400 (2번)

2 **수급애로 해결 지원** ①물량확보

3. 보세구역 활용 자재비축 및 신속통관 지원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대상 품목을 직접 수입하는 업체
- 지원내용
 - (자재비축) 자체 비축공간이 부족한 업체가 확보한 주요 원자재에 대해 보세구역(주요 공항만 지정장치장, CY)을 활용*하여 비축 지원
 -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30일 경과시 2%) 면제,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연장 (15일 → 필요기간), 보세구역 장치기간 연장(2~3개월 → 필요기간)
 - (신속통관) 선적일정을 사전 입수하여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검사선별 제외, 신속한 수입심사 등을 통해 신고 즉시 처리
 - (수입대체) FTA 체결국으로 수입처를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1:1 맞춤형 FTA 활용 컨설팅
 - (경영안정) 수출규제로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환급금 신속 지급 및 관세조사 등 유예
- 신청방법
 - (신청장소)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평택직할세관의 경우 통관지원과)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 (구비서류) ① 신청서*(소정 서식), ② 피해사실 입증서류**
 -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뉴스/소식>새소식>공지사항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피해 접수창구 운영 안내"
 - ** (예시) 일본 소재 수출업체의 개별허가 신청서 사본, 규제대상품목의 기존 거래내역 증빙자료(계약서 등), 제3국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
- 문의처

세관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인천본부세관	032-452-3639	032-891-9203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78/1389	02-548-0211	seoulsupport@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52	051-620-1118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83	053-230-5599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2	062-975-3113	gwangjufta@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042	031-8054-7046	fta016@korea.kr

4. 수입처 다변화 지원

① 수출입은행

□ 지원대상

-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으로 수입다변화를 하고자 하는 기업
- *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수입 곤란이 예상되는 품목을 수입·구매하고 있거나 예정인 우리기업(단, 2018.1.1.일부터 해당품목 수입·구매실적 증빙 가능 기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수입금액의 90% 이내
- (금리우대) 0.5%p 감면
- (대출기간) 최대 2년

- 문의처 : 수출입은행 기업금융1,2부 ☎ 02-6255-5413, 5426
중소중견금융1,2부 ☎ 02-3779-6427 / 02-6255-5304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65, 5273, 5278

② 무역보험공사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확인 또는 피해예상기업

- ① 일본 백색국가 배제 관련 품목 수입실적(전년도 또는 최근 1년)이 있는 기업
- ② 대일 수출·수입실적이 전년도(또는 최근 1년) 대비 30%이상 감소하였거나, 일본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취소 등의 피해 발생 기업
- ③ 일본 수입자와 무역보험 또는 수출신용보증 유효한도 보유중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① 일본외 국가로의 수입처 다변화 지원

- (국내수입자 특별보증) 日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던 국내기업이 일본외 국으로부터 해당 품목 수입시, 소요되는 수입자금 보증
- (대체수입처 발굴 특별보험) 日수출규제 품목을 일본외로부터 수입하면서 국내기업이 해외거래처 앞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미회수 위험 보장
- (대체시장 개척 지원) 대체 거래처 발굴을 위한 해외소재 기업 현장 방문조사 지원 및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무료(5회) 제공
- (부품·소재기업 인수금융) 日 수출규제 품목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M&A하는 우리기업에게 장기금융 제공·보험료 할인

② 2차 피해가 예상되는 대 일본 수출 중소·중견기업 선제적 지원

- (피해기업 특별보증) 만기도래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지원
- (수출보험료 할인) 일본 수입자 앞 단기수출보험(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한도를 보유 중인 기업이 일본 외 국가로 수출다변화 시 단기수출 보험(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보험료 10% 할인

③ 수입규제 품목 수입 시 수입보험 지원

- 일본이 포괄적 수출허가를 제외한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르폴리이미드 3가지 품목 등 백색국가 배제관련 피해품목 수입보험 지원(수입자금 보증, 선급금 미회수 위험 보장)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전국 영업점(고객센터)
☎ 02-399-6584, 영업총괄실

5.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1 산업은행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부품기업법상 소재·부품기업)* (계열대기업 제외)

* [별첨1]을 참조하되, 창업, 사업재편·사업다각화 등을 통한 동분야 신규 진출 기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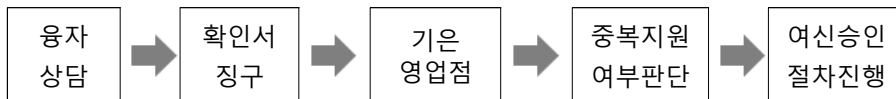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용도 및 한도) 시설자금 2,500억원
- (여신통화) 원화, 미달러화(US\$), 엔화(¥), 유로화(€)
- (금리우대)

기업규모	원화	외화
중소	△0.7%p	△0.3%p
중견	△0.6%p	△0.2%p

- (운용기간) 3년('19년~' 21년)
- (대출기간) 15년 이내
- (여신비율) 총 소요자금(사업비)의 8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기업은행과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징구 후 취급

□ 문의처 : 산업은행 중소기업금융실 ☎ 02-787-5624(또는 5602)

2 기업은행

□ 지원대상

- 전통 주력산업^{주1)} 및 新성장 분야^{주2)} 중소·중견기업

주1) 전통 주력산업

- (19년 집중지원 대상 4대 주력산업) 자동차 / 조선 / 디스플레이 / 석유화학
- (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사업군), 소재·부품·장비 /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 자동차·조선 / 섬유·가전

- #### 주2) 3대 전략투자분야, 8대 핵심선도산업 분야,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5G 전략산업, 4대 유망 서비스업,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 지원내용

- (운용기간) 3년('19년~' 21년)
- (금리우대) 최대 0.5%p 감면
- (지원한도) 동일 기업당 최대 250억원
 - (시설자금) 250억원, (운전자금) 30억원^{주)}
 - 주) 단, 동 상품으로 지원받은 시설자금의 20% 이내
- (유의사항)
 - 동일기업 앞 동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은행과의 중복 수혜 불가
 - 신규 자금에 한하며, 기존 대출의 상환 용도는 지원 불가

- 문의처 : 기업은행 중소중견금융실 ☎ 02-787-5624(또는 5602)

6.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계열대기업 제외)

[이하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 ① 2018.1.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 ② 향후 수입·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 ③ 상기 ①, ②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 (금리우대) 일반기업 0.8%, 특정기업* 1.0%p 인하
 - * 조선·자동차업종, 지방소재기업, 일자리창출효과 큰 물류, 관광, 보건, 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 (용도 및 통화) 운전자금, 원화
- (대출기간) 1년 이내
- (유의사항) 통장식 한도성 상품 취급 불가, 타은행 대환 가능

□ 문의처 : 산업은행 중소기업금융실 ☎ 02-787-5624(또는 5602)

7.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1 기업은행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기업

- ① 2018.1.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 ② 향후 수입·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 ③ 상기 ①, ②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 지원내용

- (대출종류) 중소기업자금 · 일반자금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제외)
- (지원한도) 동일 기업당 3억원 이내
- (금리우대) 최대 1.0%p 감면
- (대출기간) 1년 이내(최장 3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 (필요서류)

대상 구분	확인서류 예시
① 수입·구매 ^{주)} 기업	- (수입) 수입신고필증 등 - (구매)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등
② 수입·구매 예정기업	- Sales contract, 구매계약서 등
③ 상기 ①, ②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	-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①, ②번 기업(거래수주기업)의 피해 품목 확인용

주) 구매기업 : 수입총판 등을 통해 수출제한 품목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기업

- 문의처 : 기업은행 ☎ 1566-2566 및 전국 영업점

2 산업은행

□ 지원대상

- 산업은행 기존 거래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 ※ 지원 불가 대상 : 계열대기업, 부실기업(구조조정 대상·신용등급 CC이하 등)

□ 지원내용

- (용도 및 통화) 운전자금, 원화 및 외화
- (대출기간) 1년 이내, 연내 1회
- (유의사항)
 - 기존에 산업은행과 거래중인 기업만 대상
 - 기한연장(만기도래시 동 자금으로의 당행대환 포함) 불가
 - 타행대환을 위한 동 자금 사용 불가 (대출상환용도 금지)

□ 문의처 : 기존 거래중인 산업은행 영업점 담당자 앞 신청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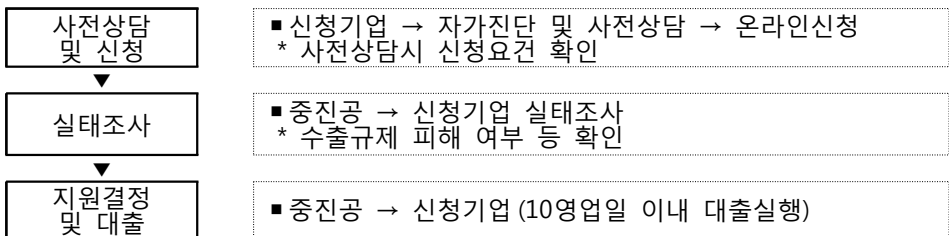
-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 중소기업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의 생산차질로 인해 거래가 감소한 협력 중소기업*
 - * 제조업(KSIC 10~34) 영위기업에 한함
 - * 1~2차 협력업체 또는 1~2차 협력업체와 거래비중 50%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일본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중 일본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수출 피해기업(수출취소 등)

지원내용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금리 : 2.8% 내외(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신청기간 : 공고 시행일(8.9)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절차



구비서류

- ① 정책자금 용자신청서(정책자금 활용계획서, 일시적경영애로 신청서)
- ② 관세청 수입실적 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전년도 동월 또는 신청 전전월) 등 피해 증빙이 가능한 서류

지원규모 : 500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1357, www.kosmes.or.kr

8.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지원 특별 보증

□ 지원대상

-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18.1.1일 이후 수출규제 품목^{주1)} 수입실적 보유(수입예정 포함) 기업^{주2)}
- ② '18.1.1일 이후 수출규제 품목^{주1)} 구매(구매예정 포함) 기업^{주2)}
- ③ 정부, 지자체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영안정자금 등을 배정받은 기업

주1) 수출규제 품목 : 159개 중점관리품목

주2) 수입신고필증, 내국신용장, 구매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 지원내용

- 대상채무 : 운전자금
- 보증한도 : 최근 1년 또는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 1/2~1/4 이내
- 보증비율 : 90% 부분보증
- 보증료율 : 0.3%p 차감
- 보증기한 : 장기 5년 이내로 운용
- 만기연장 : 기존 보증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 휴.폐업기업, 책임경영의무 위반 특별약정기업 등 지원 실익이 없는 기업은 제외

□ 지원규모 : 총량한도 1조원

□ 운용기간 : ~'19.12.31일 까지(필요시 연장)

□ 신청방법 : 신보 본점 또는 가까운 지점에 전화문의 후 직접 신청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9.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수출도약기업, 수출초보기업 및 일본수출기업

- 6대 新수출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및 지방소재 수출기업 등은 「수출실적 우대 기업」으로 운용

*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식품·수산물 관련 산업

- 수출실적 산정 시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판매한 간접수출실적 포함(구매확인서 등으로 확인)

[수출기업 분류]

분류기준	분 류	지원 대상 기업
수출실적 등	수출 도약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별표]에 해당하는 기업은 미화 30만 달러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참여기업,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사업 참여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관련 환어음보험 가입기업 ■ 대외 유관기관 추천기업 (신용보증부에서 별도 통보)
	수출 초보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으나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미만인 기업 ([별표]에 해당하는 기업은 미화 30만 달러 미만) ■ 수출실적은 없으나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으로 수출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
일본수출여부	일본 수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본수출실적 보유 기업

□ 지원내용

- 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특례조치 및 우대사항

구 분	수출도약기업	수출초보기업	일본수출기업
보증한도	추정/최근/당기매출액의 1/2	추정/최근/당기매출액의 1/3	추정/최근/당기매출액의 1/2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3%p 차감		

- 지원규모 : 총량한도 8,000억원
- 운용기간 : ~'19.12.31일 까지(총량한도 소진 시 운용중단)
- 신청방법 : 신보 본점 또는 가까운 지점에 전화문의 후 직접 신청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10.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보증

□ 지원대상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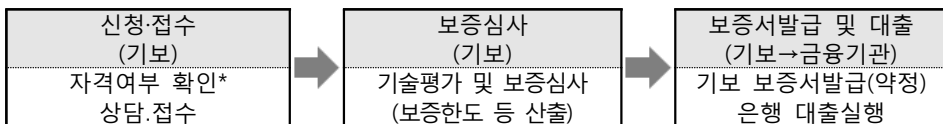
- ❶ '18.1.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 ❷ 향후 수입·구매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정부에서 지정한 품목 (HSK코드)
- ❸ ❶·❷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 지원내용

- ① 기존보증: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 ② 신규보증
 - 대상채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우대사항: 보증비율(90%), 보증료감면(0.3%p), 심사기준완화, 전결권완화
 - 운전자금 보증한도 우대: 같은 기업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 사정은 추정매출액 1/2로 우대 적용

□ 신청기간 : 시행일(8.8)로부터 별도 통지시까지(자금소진시 자동종료)

□ 지원절차



* 기보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지원대상기업 여부 자가진단 가능(자가진단 후 신청)

□ 지원규모 : 6,000억원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www.kibo.or.kr

② 수급애로 해결 지원 ② 대체수입처 확보

11. 대체 수입처 발굴 조사 및 현지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최근 2년 내 일본에서 전략물자 또는 비전략물자 중 규제 대상품목*을 수입한 실적 증빙을 갖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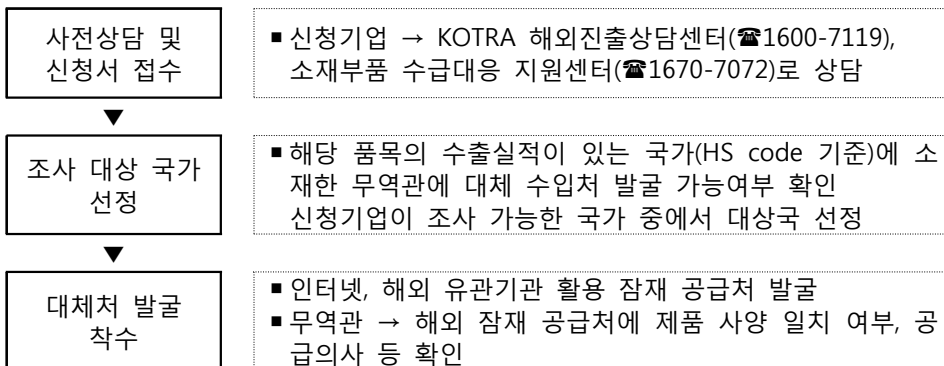
* 전략물자 1,120개 및 비전략물자 중 HS 25~40류, 54~59류, 63류, 68~93류, 95류 7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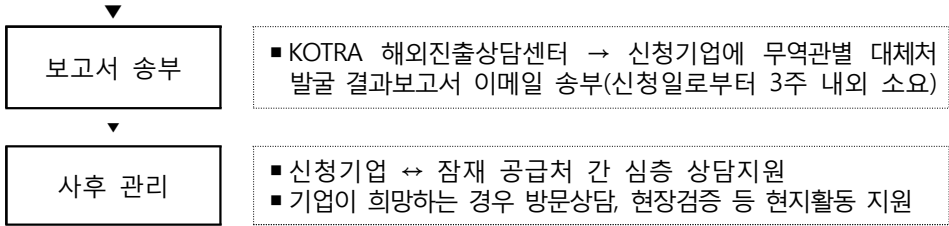
□ 지원내용

- 대체 수입처 발굴 조사
 - 대체 수입을 희망하는 국가별 5개 이내 공급처의 기업개요, 연락처, 제품 사양 등 조사
 - 중소·중견기업은 무료로 지원, 대기업은 15만원/국가
- 방문상담, 현장검증 등 현지활동 지원
 - 대체 수입희망처와의 상담주선, 통역 및 차량지원 등
 - 중소중소·중견기업은 수수료(50~140만원) 50% 할인

□ 신청기간 : 수시

□ 지원절차





구비서류

- ① 일본수출규제 관련 대체 수입처 발굴 신청서
- ② 최근 2년 내 일본에서 전략물자 또는 비전략물자 중 규제 대상 품목을 수입한 수입신고필증 사본

문의처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 www.kotra.or.kr

12. 국내수입자 특별보증, 대체 수입처 발굴 특별보험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확인 또는 피해예상기업

- 일본 백색국가 배제 관련 품목 수입실적(전년도 또는 최근 1년)이 있는 기업
- 대일 수출·수입실적이 전년도(또는 최근 1년) 대비 30%이상 감소하였거나, 일본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취소 등의 피해 발생 기업
- 일본 수입자와 무역보험 또는 수출신용보증 유효한도 보유중인 중소·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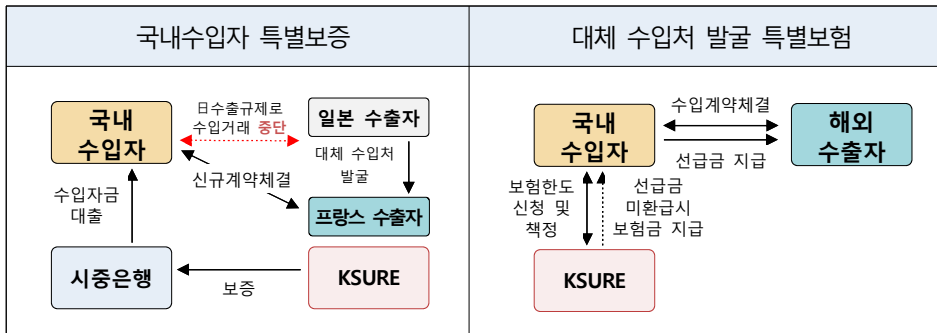
□ 지원내용

① (국내수입자 특별보증)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던 기업이 일본 외 국가로부터 해당 품목을 수입할 경우 소요되는 수입자금 보증*

② (대체 수입처 발굴 특별보험) 수출규제 품목을 일본 외 국가로부터 수입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미회수 위험 보장*

* 수입보험에서 운영중인 책임가능한도 대비 2배 이내 한도 부여

[국내수입자 특별보증 및 신규 대체 수입처 발굴 특별보험]



□ 시행기간 : ‘19.8.5 ~ ‘20.8.4

* 단, 종료일 이전 일본 수출규제 상황 정상화 시 조기종료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 02-399-6584

13. 대체시장 개척지원, 해외기업 인수금융 지원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확인 또는 피해예상기업

- 일본 백색국가 배제 관련 품목 수입실적(전년도 또는 최근 1년)이 있는 기업
- 대일 수출·수입실적이 전년도(또는 최근 1년) 대비 30%이상 감소하였거나, 일본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취소 등의 피해 발생 기업
- 일본 수입자와 무역보험 또는 수출신용보증 유효한도 보유중인 중소·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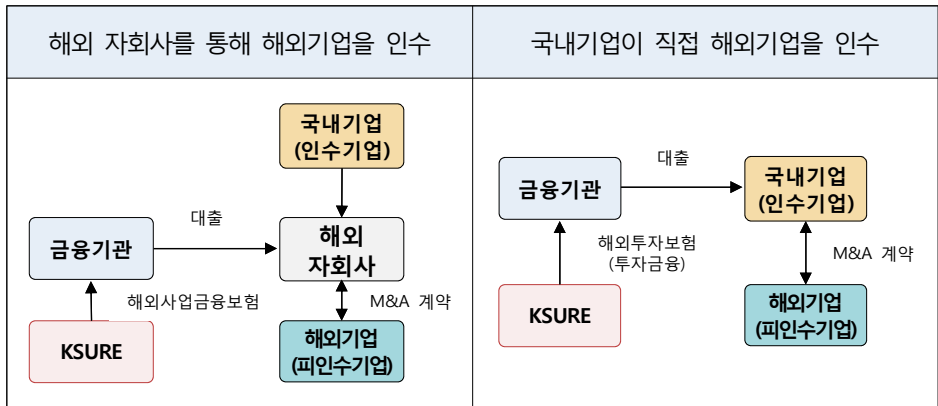
□ 지원내용

① (대체시장 개척지원) 대체거래처 발굴을 위한 해외소재 기업 현장 방문조사 지원* 및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 무료(5회)제공

* (Mobile-K Office) 국외기업을 직접방문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신속한 지원의사결정

② (부품소재 해외기업 인수금융) 수출규제 품목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을 M&A하는 기업에게 장기금융(5년 초과) 제공 및 보험료 할인(30%)

[부품·소재 해외기업 인수금융]



□ 시행기간 : '19.8.5 ~ '20.8.4

* 단, 종료일 이전 일본 수출규제 상황 정상화 시 조기종료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 02-399-6584

14. 수입처 다변화 지원

① 수출입은행

□ 지원대상

-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으로 수입다변화를 하고자 하는 기업
- *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수입 곤란이 예상되는 품목을 수입·구매하고 있거나 예정인 우리기업(단, 2018.1.1.일부터 해당품목 수입·구매실적 증빙 가능 기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수입금액의 90% 이내
- (금리우대) 0.5%p 감면
- (대출기간) 최대 2년

- 문의처 : 수출입은행 기업금융1,2부 ☎ 02-6255-5413, 5426
중소중견금융1,2부 ☎ 02-3779-6427 / 02-6255-5304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65, 5273, 5278

② 무역보험공사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확인 또는 피해예상기업

- ① 일본 백색국가 배제 관련 품목 수입실적(전년도 또는 최근 1년)이 있는 기업
- ② 대일 수출·수입실적이 전년도(또는 최근 1년) 대비 30%이상 감소하였거나, 일본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취소 등의 피해 발생 기업
- ③ 일본 수입자와 무역보험 또는 수출신용보증 유효한도 보유중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① 일본외 국가로의 수입처 다변화 지원

- (국내수입자 특별보증) 日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던 국내기업이 일본외 국으로부터 해당 품목 수입시, 소요되는 수입자금 보증
- (대체수입처 발굴 특별보험) 日수출규제 품목을 일본외로부터 수입하면서 국내기업이 해외거래처 앞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미회수 위험 보장
- (대체시장 개척 지원) 대체 거래처 발굴을 위한 해외소재 기업 현장 방문조사 지원 및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무료(5회) 제공
- (부품·소재기업 인수금융) 日 수출규제 품목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M&A하는 우리기업에게 장기금융 제공·보험료 할인

② 수입규제 품목 수입 시 수입보험 지원

- 일본이 포괄적 수출허가를 제외한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르폴리이미드 3가지 품목 등 백색국가 배제관련 피해품목 수입보험 지원 (수입자금 보증, 선급금 미회수 위험 보장)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전국 영업점(고객센터)
☎ 02-399-6584, 영업총괄실

15. 해외물류센터 지원

□ 지원대상

- 최근 2년 내 일본 규제대상 품목의 對일본 수입증빙을 갖춘 기업
 - * 신청 시 참가목적란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이라 명시하고 첨부에 최근 2년 내 일본제품 수입 증빙 첨부
- 대체 공급선 발굴 기업 중, 해외현지 물류지원이 필요한 기업
 - * 수입자 현지물류부담이 큰 계약형태의 경우 해당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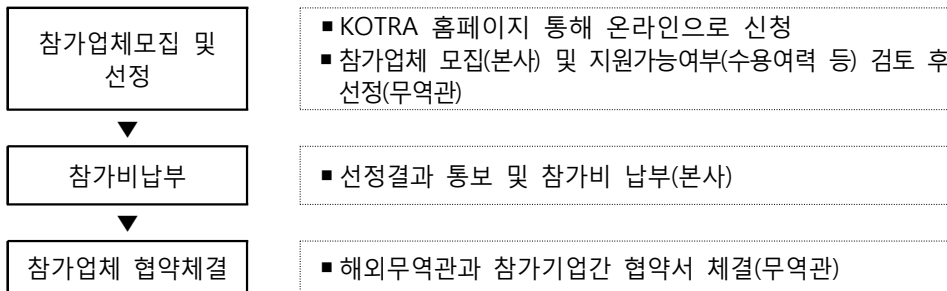
-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84개국 129개소)을 통한 수입국 현지물류 지원
 - * 현지 경쟁력 있는 협력물류회사를 수행사로 선정, 종합물류서비스 제공(통관, 보관, 운송 등)
- 창고이용여부에 따라 지원내역 및 참가비 구분(무료 또는 국고 50%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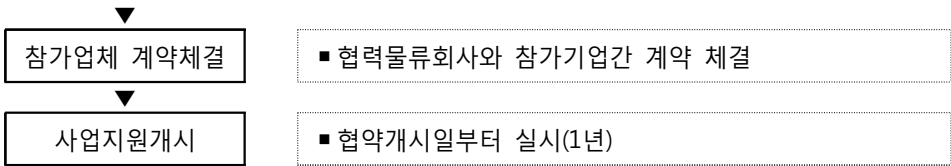
현지창고이용여부	제공서비스	참가비
창고불필요	공동물류센터 제외한 물류서비스 제공	무료지원
창고필요	공동물류센터 포함한 물류서비스 제공	지역별 연간참가비 30~100만원

- * 소재·부품 특성 상 신속한 수급이 관건으로 창고불필요 기업 다수 예상(무료지원 실시)
- * 참가기업 부담 : 현지운송, 국제운송, 터미널 비용 등 기타 물류서비스 이용료(할인 요율 10~20%)

□ 신청기간 : 9월 1일 이후, 연중 상시모집

□ 지원 절차





구비서류

- ① 최근 2년 내 일본 규제대상 품목의 수입 증빙 서류
- ② 수입품에 대한 브로셔 또는 상품 소개자료

지원규모 : 2억원

문의처 : KOTRA 유망기업팀(02-3460-7428, smkwon@kotra.or.kr)

16. 수출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대이란제재 피해기업,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19년 추경에 한하여 선발 시 우대(우대조건은 내역사업별 상이)
 - * 전략물자관리원 일본 통제대상품목, 비민감 품목 참조(japan.kosti.or.kr)

□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를 지급받은 해당기업이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이용한 후 소요비용 정산
 - * 국가지원금(보조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되며 내역사업별 지원한도 상이
 - * (추경)바우처 협약기간 : '19. 10. 1 ~ '20. 7. 30(10개월)
- 바우처 사용은 전용 메뉴판에 등록된 12개 분야* 5.7천여개 서비스로 제한되나, 해외에서 집행하는 해외인증·해외홍보·해외전시회 개별참가 비용에 한하여 사후정산 허용
 - * ①조사일반컨설팅, ②통번역, ③역량강화교육, ④특허·지재권·시험, ⑤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⑥홍보·광고, ⑦브랜드개발·관리, ⑧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⑨법무·세무·회계·컨설팅, ⑩디자인개발, ⑪홍보동영상, ⑫해외규격인증 등(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상세 서비스 확인 가능)

□ 지원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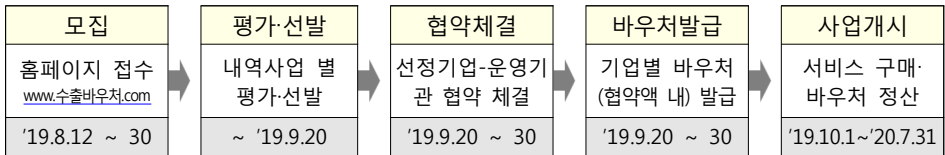
내역사업	모집규모 (개사)	지원대상	국고한도 (만원)	국고 보조율
월드챔프 육성	55	WC300 선정기업, Pre-Post WC기업	4,500~7,500	30~70%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53	글로벌성장희망 중견기업	7,500	50%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80	5대 소비재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e커머스기업	2,877	70%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30	서비스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2,880	70%

□ 신청기간 : '19. 8. 12(월) 10시 ~ 30일(금) 18시 까지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진행절차



□ 신청 시 유의사항

- 최대 2개 내역사업까지 동시신청 가능하나 최종 1개 사업만 선정
- 10월 1일 기준 유효한 협약을 보유한 타기관(중기부, 농림부 등) 수출 바우처 수혜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협약 체결 후 중도해지 기업은 차년도 신청자격이 상실되며, 바우처 잔액이 과도한 경우에도 불이익(감점 또는 참여금지) 있음

□ 문의처

내역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월드챔프 육성	KOTRA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36·7237·7233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02-3460-7231·7241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KOTRA 소비재전자상거래실	02-3460-3347·7747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KOTRA 지식서비스팀	02-3460-7609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	KOTRA 수출바우처팀	02-3460-3425·3422

17. 일본 ICP기업 활용 지원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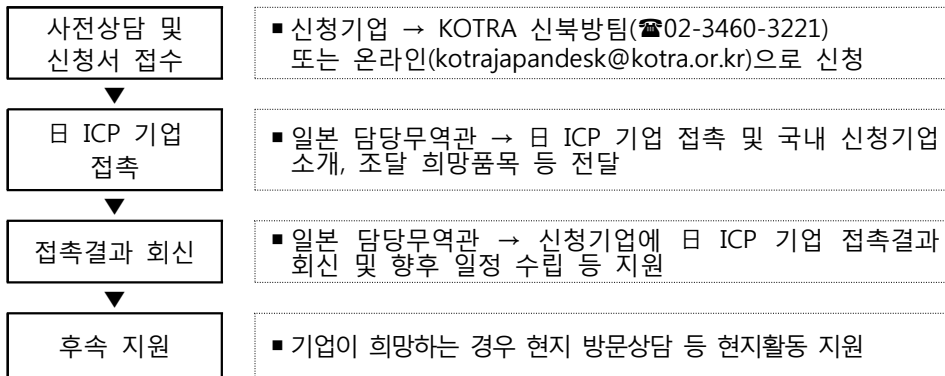
- 일본기업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거나 관심 있는 모든 기업

지원 내용

- 공개 ICP 기업과 우리기업간의 비즈니스 미팅 주선
 - 일본 ICP기업과의 거래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을 위해, 현지 무역관이 ICP기업 초기 접촉 및 국내기업 소개 진행
- 일본기업의 ICP 등록 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무료)
 - 관심 일본기업의 ICP 등록 여부를 일본 ICP 전담직원이 직접 확인

신청기간 : 수시

지원절차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처 : KOTRA 신북방팀(02-3460-3221, kotrajapandesk@kotra.or.kr)

일본 CP제도 활용 설명회

□ 설명회 주요내용

- 일본 CP제도 상세 안내, 일본 CP 기업 소개
- 일본 CP기업 활용을 위한 KOTRA 지원내용 소개
 - 서비스 신청 절차 안내
 - 국내기업과 일본 CP기업간의 상담 주선 프로세스 소개

□ 설명회 일정

구분	일자	지역	장소
1	8.26(월)	서울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
2	8.27(화)	부산	부산무역회관 6층 대회의실
3	8.27(화)	대전	대전무역회관
4	8.28(수)	창원	창원컨벤션센터
5	8.29(목)	경기남부	광고테크노밸리 바이오센터 1층 대회의실
6	8.29(목)	광주	광주무역회관
7	8.30(금)	인천	인천대 미추홀캠퍼스 사범대 창업다락 507호
8	8.30(금)	충남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대회의실
9	9.2(월)	제주	제주지부
10	9.3(화)	충북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컨벤션홀
11	9.4(수)	경기남부	화성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
12	9.4(수)	울산	울산경제진흥원 5층 대회의실
13	9.5(목)	경기북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4	9.5(목)	전북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별관 미래실
15	9.9(월)	대구	대구무역회관 4층 대회의실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KOTRA 신북방팀(02-3460-3221, eunjikim@kotra.or.kr)

18. 분업적 협력을 위한 피칭데이(Pitching-Day)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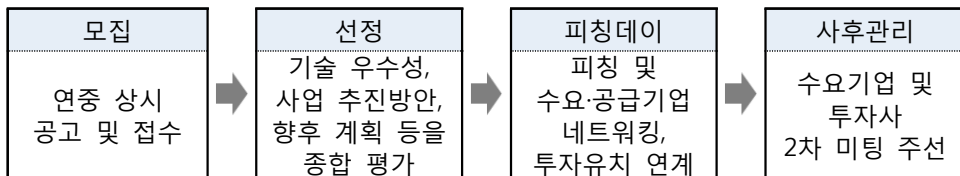
- 우수 중소기업에게 피칭데이(Pitching-Day)를 통해 수요기업과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의 기회 지원

□ 지원내용

- 피칭데이 참가 및 수요·공급기업 네트워킹 기회 부여
- 우수 피칭기업에게 수요기업 및 투자유치 후속 연계 지원

□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연중 상시
- 모집대상 : ① 반도체, ② 디스플레이, ③ 자동차, ④ 전기전자, ⑤ 기계금속, ⑥ 기초화학 분야 우수 중소기업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msk@win-win.or.kr) 접수
- * 메일 접수 후 전화 확인 필수(02-368-8935)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피칭 자료(기존 사용 자료 가능) * 발표시간 5분 내외, 15페이지 내외로 구성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정책개발부 ☎ 02-368-8935

19.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1] 산업은행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부품기업법상 소재·부품기업)* (계열대기업 제외)
- * [별첨1]을 참조하되, 창업, 사업재편·사업다각화 등을 통한 동분야 신규 진출기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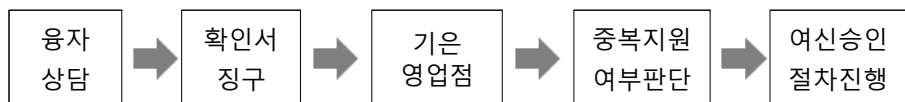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용도 및 한도) 시설자금 2,500억원
- (여신통화) 원화, 미달러화(US\$), 엔화(¥), 유로화(€)
- (금리우대)

기업규모	원화	외화
중소	△0.7%p	△0.3%p
중견	△0.6%p	△0.2%p

- (운용기간) 3년('19년~' 21년)
- (대출기간) 15년 이내
- (여신비율) 총 소요자금(사업비)의 8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기업은행과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 징구 후 취급

- 문의처 : 산업은행 중소기업금융실 ☎ 02-787-5624(또는 5602)

2] 기업은행

□ 지원대상

- 전통 주력산업^{주1)} 및 新성장 분야^{주2)} 중소·중견기업

주1) 전통 주력산업

- ('19년 집중지원 대상 4대 주력산업) 자동차 / 조선 / 디스플레이 / 석유화학
- (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사업군), 소재·부품·장비 /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 자동차·조선 / 섬유·가전

- #### 주2) 3대 전략투자분야, 8대 핵심선도산업 분야,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5G 전략산업, 4대 유망 서비스업,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 지원내용

- (운용기간) 3년('19년~' 21년)
- (금리우대) 최대 0.5%p 감면
- (지원한도) 동일 기업당 최대 250억원
- (시설자금) 250억원, (운전자금) 30억원^{주)}

주) 단, 동 상품으로 지원받은 시설자금의 20% 이내

- ### □ 문의처 : 기업은행 중소기업금융실 ☎ 02-787-5624(또는 5602)

20.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계열대기업 제외)

[이하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 ❶ 2018.1.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 ❷ 향후 수입·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 ❸ 상기 ❶, ❷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 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 (금리우대) 일반기업 0.8%, 특정기업* 1.0%p 인하
 - * 조선자동차업종, 지방소재기업, 일자리창출효과 큰 물류, 관광, 보건 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 (용도 및 통화) 운전자금, 원화
- (대출기간) 1년 이내
- (유의사항) 통장식 한도성 상품 취급 불가, 타은행 대환 가능

□ 문의처 : 산업은행 중소기업금융실 ☎ 02-787-5624(또는 5602)

21.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1 기업은행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① 2018.1.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 ② 향후 수입·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 ③ 상기 ①, ②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 지원내용

- (대출종류) 중소기업자금 · 일반자금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제외)
- (지원한도) 동일 기업당 3억원 이내
- (금리우대) 최대 1.0%p 감면
- (대출기간) 1년 이내(최장 3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 (필요서류)

대상 구분	확인서류 예시
① 수입·구매 ^{주)} 기업	- (수입) 수입신고필증 등 - (구매)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등
② 수입·구매 예정기업	- Sales contract, 구매계약서 등
③ 상기 ①, ②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	-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①, ②번 기업(거래수주기업)의 피해 품목 확인용

주) 구매기업 : 수입총판 등을 통해 수출제한 품목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기업

- 문의처 : 기업은행 ☎ 1566-2566 및 전국 영업점

2 산업은행

□ 지원대상

- 산업은행 기존 거래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 ※ 지원 불가 대상 : 계열대기업, 부실기업(구조조정 대상·신용등급 CC이하 등)

□ 지원내용

- (용도 및 통화) 운전자금, 원화 및 외화
- (대출기간) 1년 이내, 연내 1회
- (유의사항)
 - 기존에 산업은행과 거래중인 기업만 대상
 - 기한연장(만기도래시 동 자금으로의 당행대환 포함) 불가
 - 타행대환을 위한 동 자금 사용 불가 (대출상환용도 금지)

□ 문의처 : 기존 거래중인 산업은행 영업점 담당자 앞 신청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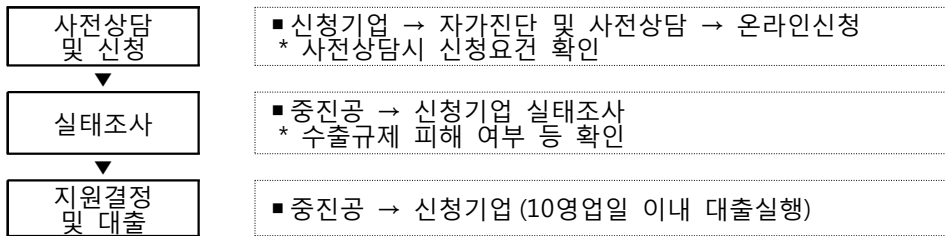
-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 중소기업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의 생산차질로 인해 거래가 감소한 협력 중소기업*
- * 제조업(KSIC 10~34) 영위기업에 한함
- * 1~2차 협력업체 또는 1~2차 협력업체와 거래비중 50%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일본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중 일본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수출 피해기업(수출취소 등)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금리 : 2.8% 내외(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신청기간 : 공고 시행일(8.9)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 구비서류

- ① 정책자금 용자신청서(정책자금 활용계획서, 일시적경영애로 신청서)
- ② 관세청 수입실적 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전년도 동월 또는 신청 전전월) 등 피해 증빙이 가능한 서류

□ 지원규모 : 500억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1357, www.kosmes.or.kr

22.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지원 특별 보증

□ 지원대상

-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18.1.1일 이후 수출규제 품목^{주1)} 수입실적 보유(수입예정 포함) 기업^{주2)}
- ② '18.1.1일 이후 수출규제 품목^{주1)} 구매(구매예정 포함) 기업^{주2)}
- ③ 정부, 지자체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영안정자금 등을 배정받은 기업

주1) 수출규제 품목 : 159개 중점관리품목

주2) 수입신고필증, 내국신용장, 구매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 지원내용

- 대상채무 : 운전자금
- 보증한도 : 최근 1년 또는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 1/2~1/4 이내
- 보증비율 : 90% 부분보증
- 보증료율 : 0.3%p 차감
- 보증기한 : 장기 5년 이내로 운용
- 만기연장 : 기존 보증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 * 휴·폐업기업, 책임경영의무 위반 특별약정기업 등 지원 실익이 없는 기업은 제외

□ 지원규모 : 총량한도 1조원

□ 운용기간 : ~'19.12.31일 까지(필요시 연장)

□ 신청방법 : 신보 본점 또는 가까운 지점에 전화문의 후 직접 신청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23.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수출도약기업, 수출초보기업 및 일본수출기업

- 6대 新수출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및 지방소재 수출기업 등은 「수출실적 우대 기업」으로 운용

*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식품·수산물 관련 산업

- 수출실적 산정 시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판매한 간접수출실적 포함 (구매확인서 등으로 확인)

[수출기업 분류]

분류기준	분 류	지 원 대 상 기 업
수출실적 등	수출도약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별표]에 해당하는 기업은 미화 30만 달러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참여기업,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사업 참여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관련 환어음보험 가입기업 ▪ 대외 유관기관 추천기업 (신용보증부에서 별도 통보)
	수출초보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으나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미만인 기업 ([별표]에 해당하는 기업은 미화 30만 달러 미만) ▪ 수출실적은 없으나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으로 수출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
일본수출여부	일본수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본수출실적 보유 기업

□ 지원내용

- 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특례조치 및 우대사항

구 분	수출도약기업	수출초보기업	일본수출기업
보증한도	추정/최근/당기매출액의 1/2	추정/최근/당기매출액의 1/3	추정/최근/당기매출액의 1/2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3%p 차감		

- 지원규모 : 총량한도 8,000억원
- 운용기간 : ~'19.12.31일 까지(총량한도 소진 시 운용중단)
- 신청방법 : 신보 본점 또는 가까운 지점에 전화문의 후 직접 신청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24.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보증

□ 지원대상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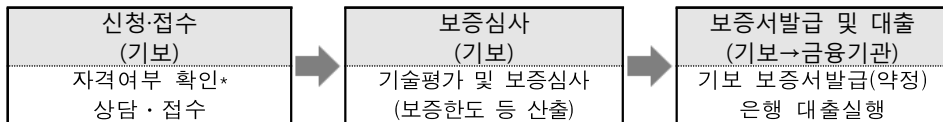
- ① '18.1.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 ② 향후 수입·구매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정부에서 지정한 품목 (HSK코드)
- ③ ①②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 지원내용

- ① 기존보증: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 ② 신규보증
 - 대상채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우대사항: 보증비율(90%), 보증료감면(0.3%p), 심사기준완화, 전결권완화
 - 운전자금 보증한도 우대: 같은 기업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 사정은 추정매출액 1/2로 우대 적용

□ 신청기간 : 시행일(8.8)로부터 별도 통지시까지(자금소진시 자동종료)

□ 지원절차



* 기보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지원대상기업 여부 자가진단 가능(자가진단 후 신청)

□ 지원규모 : 6,000억원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www.kibo.or.kr

② 수급애로 해결 지원 ③생산설비 확충

25. 특별연장근로 인가

- 적용대상
 - 일본 수출제한 품목 관련 업체로 산업부에서 인정한 기업으로서 일본 수출규제 대상품목*의 대체 조달시 테스트, 국산화를 위한 R&D, 생산확대 등을 위해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근로자
 -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 절차
 -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제한 품목 관련 업체 리스트 확인
 - 해당 기업이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해 해당 근로자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 제출
 - * 대상근로자, 연장 업무의 종류, 연장기간 등 포함
 - 지방노동관서에서 필요성 등 확인 후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 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 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청)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
 - (구비서류) ① 근로시간 연장 신청서, ②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 ③ 특별연장근로 사업주 확인서, ④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제한 품목 관련 업체로 인정한 확인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www.moel.go.kr

2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 단축

□ 적용대상

- 일본수출 규제에 의한 긴급상황에서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확인 요청시 다른 보고서보다 우선 처리
- * 노동부와 안전공단 본부에서 이행상황을 관리

□ 절차

- 사업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착공 30일전)
- 안전보건공단 서류 심사(30일, 보완기간 제외)
- 설치과정 중 현장 확인(요청일로부터 30일)
- 시운전 단계 현장 확인(요청일로부터 30일)

※ 착공 후 설치과정 중 확인 및 설치완료 후 시운전 단계 확인*은 해당 사업장 요구날짜에 실시

* '설치과정 중 확인'은 50% 정도 설치시 신청하면 현장 확인, '시운전'은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시작하면 즉시 현장 확인 실시

□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644-4544

27.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Fast Track 지원

지원대상

- 日수출규제 대응 물질(159개 품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취급(제조, 수입, 사용 등)하는 기업

지원내용

- ① (취급시설) 지원대상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신규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 변경허가 신속처리(기존 75일 → 30일)

※ (기존 절차) 장외영향평가(30일) + 시설 검사(30일) + 영업허가(15일) = 75일
 (금번 대책) 장외영향평가 및 시설 검사 병행 + 영업허가 = 30일

- ② (신규개발물질) 국내 신규개발물질은 물질정보·시험계획서 제출 시 조건부 先제조 인정

※ (법령 규정) 화학물질 등록 시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시험자료 일부를 시험 계획서로 대체 제출 허용(시험계획서 제출가능 항목은 전체 47개 항목 중 23개 항목)
 (금번 대책) 시험계획서 제출가능 항목을 47개 전체 항목으로 확대

- ③ (R&D용 물질)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확인되면 등록면제 확인 기간 대폭 단축(최대 14일 → 익일 처리)

* 물질명, 제조·수입량, 연구기간, 연구기관, 안전사용계획(관리전담인력, 보관·저장방법 등)

- ④ (年 1톤 미만 신규물질) 신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지원대상 물질은 연 1톤 미만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토록 간소화

신청방법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허가 처리기관에 제출

문의처

지원내용	인허가 업무	처리기관	전화번호
①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장외영향평가	화학물질안전원	042-605-7000,7052
		한국환경공단	032-590-4995,4986
	취급시설 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043-750-1000,132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52-703-0500,0596
② 신규개발물질 신속출시 지원	화학물질 등록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211~5
③ R&D용 물질 등록면제 확인 단축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한국환경공단	032-590-4742,4734
④ 연 1톤 미만 신규물질 등록 간소화	화학물질 등록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211~5

28. 임대전용 산업단지 우선 입주

□ 입주대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의무기간 5년, 최장 50년
- 임대료 : (초년도) 조성원가의 3%, (이후) 당해 시·군·구 공업지역 지가 변동율에 연동하여 조정
- 임대보증금 : 1년분 임대료
- 입주업종 : 임대전용산업단지마다 다름(관리기관에 사전 확인 필요)

□ 입주 가능 임대전용산업단지 : 15개 단지

단지명	소재지	관리 기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 달성군	LH
광주첨단 과학(2단계)	광주 북구	LH
광릉테크노밸리	경기 남양주	LH
가장2	경기 오산	LH
강릉과학	강원 강릉	강릉 시청
북평	강원 동해	LH
맹동	충북 음성	음성 군청
석문	충남 당진	LH
장항생태	충남 서천	LH
정읍첨단 과학	전북 정읍	LH
해룡	전남 순천	순천 시청
나주	전남 나주	나주 시청
영천첨단부품소재	경북 영천	LH
진주	경남 진주	진주 시청
사포	경남 밀양	LH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관리기관(LH, 강릉시청, 음성군청, 순천시청, 나주시청, 진주시청)
- 구비서류

- ① 입주계약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②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의2 서식)
-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 문의처

관리기관	전화번호
LH (산업단지처)	055-922-4325
강릉시청 (기업지원과)	033-640-5940
음성군청 (기업지원과)	043-871-3953
순천시청 (투자일자리과)	061-749-4407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061-339-8323
진주시청 (균형개발과)	055-749-8942

29.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 지원

□ 지원대상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관련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범위 확인 가능

□ 지원내용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관련으로 수요-공급기업의 연계 강화 및 해당업종 지원을 위하여,
- 관계부처에서 수요-공급 기업의 공동 산단 조성에 대해 요청 시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수도권 산업단지 물량 우선배정 등 지원

□ 신청방법

- 지원대상 여부를 관계부처·지자체에 확인 및 협의

□ 문의처

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비고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044-201-366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총괄과	044-203-4264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89	
경기도	산업정책과	031-8030-3053	

30.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 지원

□ 지원대상

- 온렌딩 기본 대상이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소재부품기업법상 소재·부품기업)* (계열대기업 제외)

* [별첨1]을 참조하되, 창업, 사업재편·사업다각화 등을 통한 동분야 신규 진출기업 포함

※ (온렌딩 기본 대상) 금감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7~11등급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보통 신용등급 BBB~B0에 해당)

[표준신용등급 체계]

등급	예상부도율	등급	예상부도율
1등급	0.00%이상~0.03%이하	9등급	1.35%초과~2.50%이하
2등급	0.03%초과~0.05%이하	10등급	2.50%초과~5.50%이하
3등급	0.05%초과~0.10%이하	11등급	5.50%초과~10.00%이하
4등급	0.10%초과~0.25%이하	12등급	10.00%초과~20.00%이하
5등급	0.25%초과~0.35%이하	13등급	20.00%초과~100.00%미만
6등급	0.35%초과~0.50%이하	14등급	100.00%(회수의문)
7등급	0.50%초과~0.75%이하	15등급	100.00%(추정손실)
8등급	0.75%초과~1.35%이하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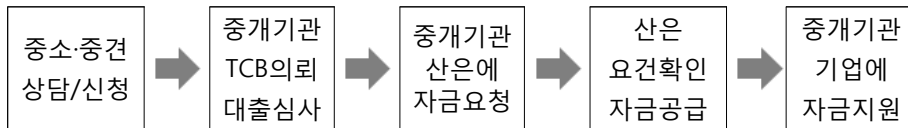
- (지원 한도)

기업규모	건별 한도	기업별한도
중소	150	300
중견	200	400

- (금리우대) 대출기준금리 0.45%p 인하(변동주기 : 1년)
- (대출기간) 1년 이상 10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상환) 연 4회 원금균등 분할상환*, 이자 연 4회 후취
* 원리금 상환기일 : 3.15일, 6.15일, 9.15일, 12.15일
- (연체이율) 온렌딩대출금리 + 3%, 15%가 상한

□ 지원절차



□ 문의처 : 거래은행 여신담당자

31.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부품기업법상 소재·부품기업)* (계열대기업 가능)

* [별첨1]을 참조하되, 창업, 사업재편·사업다각화 등을 통한 동분야 신규 진출기업 포함

지원내용

- (운용기간) 3년('19년~' 21년)
- (자금용도) 시설자금
- (대출기간) 10년 이내
- (여신통화) 원화, 미달러화(US), 엔화(¥), 유로화(€)
- (금리우대)

구 분	기활법 사업재편*		일 반	
	중소·중견	계열대	중소·중견	계열대
원 화	△0.50%p	△0.20%p	△0.40%p	△0.20%p
외 화	△0.30%p	△0.10%p	△0.20%p	△0.10%p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승인(완료)기업
(중소·중견은 10bp 추가우대)

- (유의사항) 기한연장 및 기승인 여신의 동 자금으로 재원변경(한도 반납 후 재승인 포함) 불가 (기활법 승인에 따른 재원변경은 가능)

문의처 : 산업은행 중소기업금융실 ☎ 02-787-5624(또는 5602)

32.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1 산업은행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부품기업법상 소재·부품기업)* (계열대기업 제외)
- * [별첨1]을 참조하되, 창업, 사업재편·사업다각화 등을 통한 동분야 신규 진출기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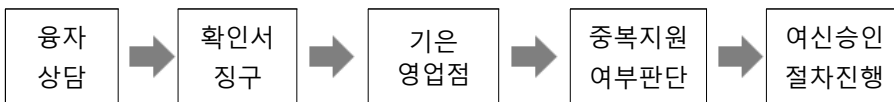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용도 및 한도) 시설자금 2,500억원
- (여신통화) 원화, 미달러화(US\$), 엔화(¥), 유로화(€)
- (금리우대)

기업규모	원화	외화
중소	△0.7%p	△0.3%p
중견	△0.6%p	△0.2%p

- (운용기간) 3년('19년~' 21년)
- (대출기간) 15년 이내
- (여신비율) 총 소요자금(사업비)의 8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기업은행과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징구 후 취급

□ 문의처 : 산업은행 중소기업금융실 ☎ 02-787-5624(또는 5602)

② 기업은행

□ 지원대상

- 전통 주력산업^{주1)} 및 新성장 분야^{주2)} 중소·중견기업

주1) 전통 주력산업

- ('19년 집중지원 대상 4대 주력산업) 자동차 / 조선 / 디스플레이 / 석유화학
- (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사업군), **소재·부품·장비** /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 자동차·조선 / 섬유·가전

주2) 3대 전략투자분야, 8대 핵심선도산업 분야,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5G 전략산업, 4대 유망 서비스업,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 지원내용

- (운용기간) 3년('19년~' 21년)
 - (금리우대) 최대 0.5%p 감면
 - (지원한도) 동일 기업당 최대 250억원
 - (시설자금) 250억원, (운전자금) 30억원^{주)}
- 주) 단, 동 상품으로 지원받은 시설자금의 20% 이내

□ 문의처 : 기업은행 중소기업금융실 ☎ 02-787-5624(또는 5602)

33. 연구개발 시설투자 촉진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구매 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 수출중단 또는 축소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추진하는 기업
-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소재·부품 기업으로 향후 동법 개정으로 장비 포함시 소재·부품·장비로 확대

□ 지원내용

- (지원한도) 실소요금액의 90% 이내
- (금리우대) 최대 1%p 감면
- (대출기간) 최대 10년(R&D) / 15년(시설투자)

□ 문의처 : 수출입은행 기업금융1,2부 ☎ 02-6255-5413, 5426

중소중견금융1,2부 ☎ 02-3779-6427/02-6255-5304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65, 5273, 5278

34.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보증

□ 지원대상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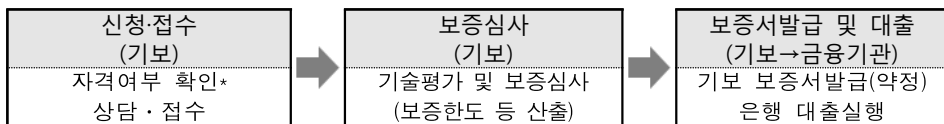
- ① '18.1.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 ② 향후 수입·구매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정부에서 지정한 품목 (HSK코드)
- ③ ①②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 지원내용

- ① 기존보증: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 ② 신규보증
 - 대상채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우대사항: 보증비율(90%), 보증료감면(0.3%p), 심사기준완화, 전결권완화
 - 운전자금 보증한도 우대: 같은 기업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 사정은 추정매출액 1/2로 우대 적용

□ 신청기간 : 시행일(8.8)로부터 별도 통지시까지(자금소진시 자동종료)

□ 지원절차



* 기보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지원대상기업 여부 자가진단 가능(자가진단 후 신청)

□ 지원규모 : 6,000억원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www.kibo.or.kr

35.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수출도약기업, 수출초보기업 및 일본수출기업

- 6대 新수출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및 지방소재 수출기업 등은 「수출실적 우대 기업」으로 운용

*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식품·수산물 관련 산업

- 수출실적 산정 시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판매한 간접수출실적 포함 (구매확인서 등으로 확인)

[수출기업 분류]

분류기준	분 류	지 원 대 상 기 업
수출실적 등	수출 도약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별표]에 해당하는 기업은 미화 30만 달러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참여기업,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사업 참여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관련 환어음보험 가입기업 ▪ 대외 유관기관 추천기업 (신용보증부에서 별도 통보)
	수출 초보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으나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미만인 기업 ([별표]에 해당하는 기업은 미화 30만 달러 미만) ▪ 수출실적은 없으나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으로 수출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
일본수출여부	일본 수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본수출실적 보유 기업

□ 지원내용

- 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특례조치 및 우대사항

구 분	수출도약기업	수출초보기업	일본수출기업
보증한도	추정/최근/당기매출액의 1/2	추정/최근/당기매출액의 1/3	추정/최근/당기매출액의 1/2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3%p 차감		

- 지원규모 : 총량한도 8,000억원
- 운용기간 : ~'19.12.31일 까지(총량한도 소진 시 운용중단)
- 신청방법 : 신보 본점 또는 가까운 지점에 전화문의 후 직접 신청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36. 신성장기반자금 지원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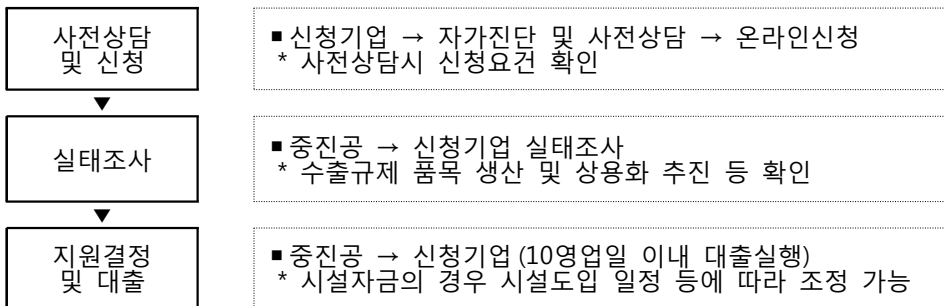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투자 기업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최대 10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시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대출금리 : 2.8% 내외(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신청기간 : 공고 시행일(8.9)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 구비서류

- ① 정책자금 용자신청서(정책자금 활용계획서)
- ②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시설자금 근거서류(견적서 및 계약서) 등

□ 지원규모 : 300억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분(지)부 ☎ 1357, www.kosmes.or.kr

37. 나노팹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추진 지원

□ 지원대상

- 시스템 반도체 설계결과 시제품제작 중소 팹리스
- 나노팹 테스트베드를 통해 반도체 후방산업(소재, 부품, 장비)국산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① 시스템반도체 연계지원 나노팹 고도화 사업

- 기 구축되어 운영중인 공공나노팹의 노후장비 개선, 추가장비 구축을 통한 시스템반도체 개발 관련 중소팹리스 설계 시제품 제작 지원
- 규모 : 19년 ~ 23년 / 총 450억원(19년 추경 90억원)

② 반도체 장비·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반도체 장비·부품·소재에 대한 국산화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
- 규모 : 19년 ~ 22년 / 총 450억원(19년 추경 115억원)
- * 반도체테스트베드 연구장비 구축, 반도체테스트베드 클린룸 구축, 반도체테스트베드 공정기술 개발 지원

- 문의처 : 시스템반도체 연계지원 나노팹 고도화 사업단 ☎ 031-546-6115
반도체 장비·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단 ☎ 042-3666-2042

38. 해외 기업 인수(M&A) 지원

신청대상

- 해외 기업의 M&A(지분투자, 인수)를 통해 기술 및 공급선 확보를 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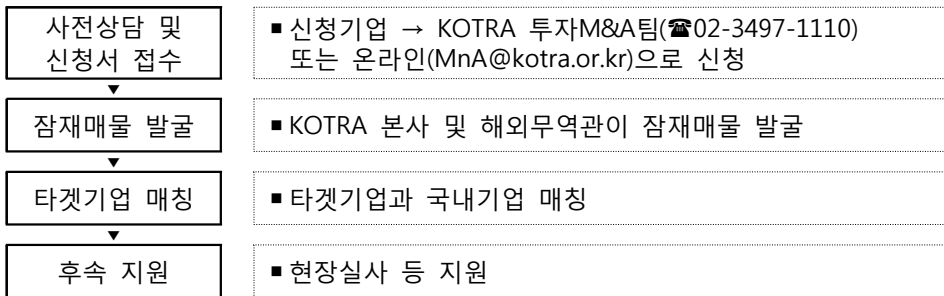
지원 내용

- M&A 매물 발굴
 - 현지 매물 탐색, 인수대상 후보군(Short list) 분석 후 매각 의사 타진 등
 - * KOTRA 해외M&A 네트워크 : 해외 무역관 30개소 및 해외 현지 자문사 약 150여개사
- 인수 자문(가치평가 및 실사 지원 등)
 - KOTRA 전담팀(투자M&A팀)의 M&A 전문가를 통한 딜 전과정에 걸친 자문 서비스 제공

수수료 : 무료(중견/중소기업 실사비용 일부 지원 가능)

신청기간 : 수시

지원절차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처 : KOTRA 투자M&A팀(02-3497-1110, MnA@kotra.or.kr)

3 기술개발 지원

39.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

지원대상

-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력 산업분야 소재·부품의 핵심원천기술 완성도 제고 및 조기 실증 지원

지원조건

내역	과제기간	과제규모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사업	4년 이내 (0.5년+3년 이내/개발내용에 따라 지원기간 조정 가능)	1단계(3억원 내외/과제) → 2단계(8억원 내외/과제)

기간/규모 : '19~'23년 / 총 480억원

예산 : '19년 31.5억원(5개 품목, 10개 내외 과제)

'19년 대상품목	대외의존 현황
OLED 청색 발광소재	일본이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 독점적 공급
형성기억 고분자 복합소재	일본에서 개발(80년) 후 상당수 관련 기술 미국·일본 보유
수광 다이오드용 유기물 하이브리드 소재	Hamamatsu, ROHM 반도체 등 일본기업 독점
금속공기전지 핵심소재	일본 NEDO, 도요타, 미쓰비시, 도시바 등이 선도
mmWave 전자패키지 소재	유기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이 원천기술 보유

신청기간 : '19.8.16 ~ 8.29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1544-6118

40. 나노패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추진 지원

□ 지원대상

- 시스템 반도체 설계결과 시제품제작 중소 팹리스
- 나노패 테스트베드를 통해 반도체 후방산업(소재, 부품, 장비)국산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① 시스템반도체 연계지원 나노패 고도화 사업

- 기 구축되어 운영중인 공공나노패의 노후장비 개선, 추가장비 구축을 통한 시스템반도체 개발 관련 중소팹리스 설계 시제품 제작 지원
- 규모 : 19년 ~ 23년 / 총 450억원(19년 추경 90억원)

② 반도체 장비·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반도체 장비·부품·소재에 대한 국산화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
- 규모 : 19년 ~ 22년 / 총 450억원(19년 추경 115억원)
- * 반도체테스트베드 연구장비 구축, 반도체테스트베드 클린룸 구축, 반도체테스트베드 공정기술 개발 지원

- 문의처 : 시스템반도체 연계지원 나노패 고도화 사업단 ☎ 031-546-6115
반도체 장비·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단 ☎ 042-3666-2042

41. 소재부품 기술개발

□ 지원대상

-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향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를 필요로 하는 기업

* 지원대상 : 소재부품기술개발, 반도체디스플레이성능평가지원, 기계산업핵심

□ 지원내용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19년 하반기 기준) : 8년 이내, 과제당 60억원 이내

* 기술개발 내용과 범위에 따라 확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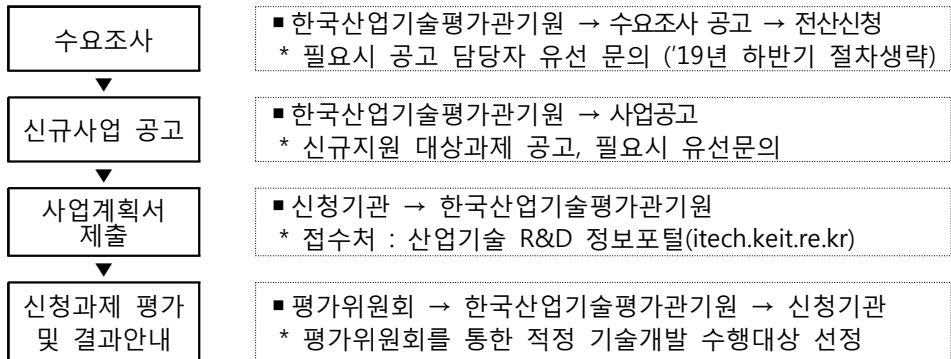
- 지원방법 : 출연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 매칭)

- 시행주체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전담기관)

- 지원형태 : 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신청기간 : 신규공고의 신청기간 참조

□ 지원절차



□ 구비서류

- ① 사업계획서(기술개발 내용, 추진체계, 사업비 등)
- ② 신청기관의 자격 적정성 확인을 위한 서류 등

□ 지원규모 : 650억원 ('19년 하반기)

□ 문의처

총괄 및 전산관련 문의처		
수요조사 관련 총괄문의	기획총괄팀	053 - 718 - 8438, 8454
전산등록(tech.keit.re.kr) 관련 문의	R&D상담 콜센터	1544 - 6633

< 기술 관련 문의처 (☎) 053-718, >

전략산업	수요조사 대상사업	PD분야	문의처
전기수소차	리튬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성능고도화 및 제조 기술개발	이차전지	8441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조선해양	8421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	8482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 (광융합휴먼케어)	디스플레이	8484
맞춤형바이오 진단치료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맞춤형진단치료제품)	바이오	8482
스마트홈	SI기반 스마트하우징 플랫폼 및 서비스	스마트전자	8483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 (전자기기핵심부품)	스마트전자	8459
서비스로봇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범부처협력로봇제품기술 / 로봇핵심공통기반기술)	로봇	8415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 (5G 연계 AR 기기 및 시스템)	스마트전자	8459
미래형 디스플레이	소재부품미래성장동력 (OLED공정장비용핵심부품 기술개발/ 디스플레이혁신공정플랫폼구축)	디스플레이	8236
	차세대 하이브리드 PCB 기술개발		8236
	초절전 LED융합 기술개발		8484
지능정보서비스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제조서비스융합/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기반기술개발활성화)	지식서비스	8223
차세대반도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반도체	8237
	시스템반도체핵심IP기술개발		8237
첨단제조공정장비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제조기반생산시스템1)	첨단장비	8417
	산업용 임베디드 시스템		8246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		8455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주력산업IT융합)		8246
스마트 산업기계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제조기반생산시스템2)	첨단기계	8420
3D 프린팅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 (3D프린팅특화설계기반 스마트제조)	첨단장비	8633
디자인융합	디자인혁신역량강화	디자인	8214
첨단소재	소재부품기술개발 (패키지형, 이종기술융합형)	금속, 섬유, 세라믹, 탄소나노, 화학공정, 뿌리기술	8332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첨단바이오신소재)	바이오	8482

4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정 품목(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 (예) 반도체장비,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디스플레이, 고분자 재료, 세라믹 재료, 정밀화학, 화학공정, 표면처리, 전기전자부품 등(산업분류기준)

** 벤처 또는 이노비즈기업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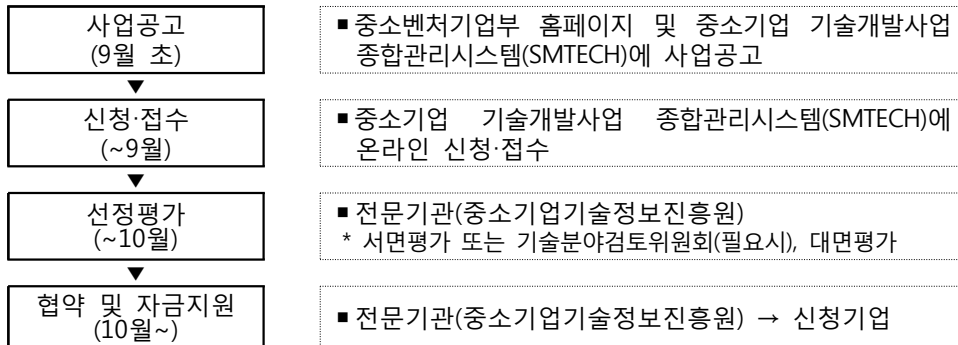
내역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비율	공모형태
혁신형기업기술개발 (글로벌도약과제-신설)	최대2년, 6억원	정부출연금 65% * 민간부담금 35%이상 부담	자유공모 (품목지정)

지원규모 : 210억원('19년 추경 예산), 신규과제 140개 내외

신청기간 : 9월중 예정*

* 자세한 사항은 9월초 공고 예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공고문' 참고

지원절차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등(사업공고 참고, 9월중 예정)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357, 042-388-0312,0317

43. 강소기업 100개 육성

□ 지원대상

-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중 중소기업이 개발 가능한 품목의 기술력과 혁신역량 등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 (별도 선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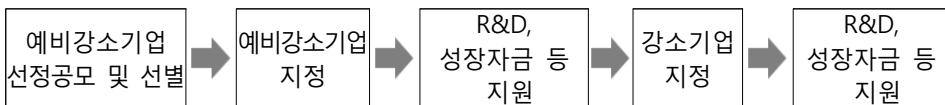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선정된 강소기업(예비 포함)에 대해 R&D*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기술이전 등 지원
 -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 테크브릿지 기술개발사업 등
-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용자한도(100억원) 내에서 지원하고 필요시 기술보증(30억원)을 추가하여 최대 130억원의 필요 자금 공급

□ 신청기간 : 9월중 예정

- * 자세한 사항은 9월에 공고되는 공고문 참고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

□ 지원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582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 051-606-7435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051-606-7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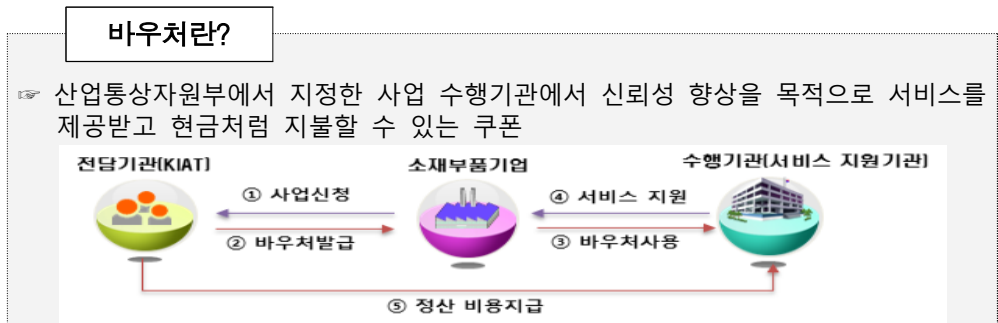
44. 신뢰성테스트 지원

□ 지원대상

- 사업 수행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해 신뢰성 향상 및 소재·부품 개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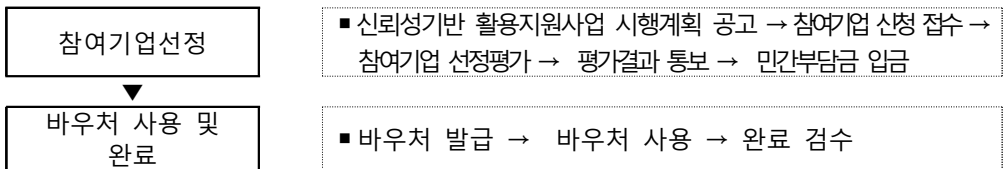
- 신뢰성 향상 및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게 바우처를 선 지급하고 사업 수행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



- 지원예산 : ‘19년 390억 지원(’ 19년 184억, 추경 206억)
- 지원기간 : 바우처 발급일 ~ ‘19.12.31(지원기간 별도 공고)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13.2%(중소기업), 25%(중견기업)를 현금 납부
- 신청기간 : 별도 공고(‘19.8월 공고예정)

□ 지원규모 : 기업당 상생형 7천만~2억원, 단독형 5백만~7천만

□ 지원절차



* 상기 일정 및 횟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뢰성바우처사업 홈페이지(신뢰성바우처.org)를 참고

구비서류

- ① (상생형) 바우처 신청서 + 수요기업 구매의향서(필수)
- ② (단독형) 바우처 신청서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단 신뢰성 향상팀

☎ 02-6009-3000/3923/3928/3938 , www.신뢰성바우처.org

45. 신뢰성 평가센터

□ 지원대상

- 소재부품과 관련하여 기 구축 신뢰성 인프라(장비·기술·전문인력)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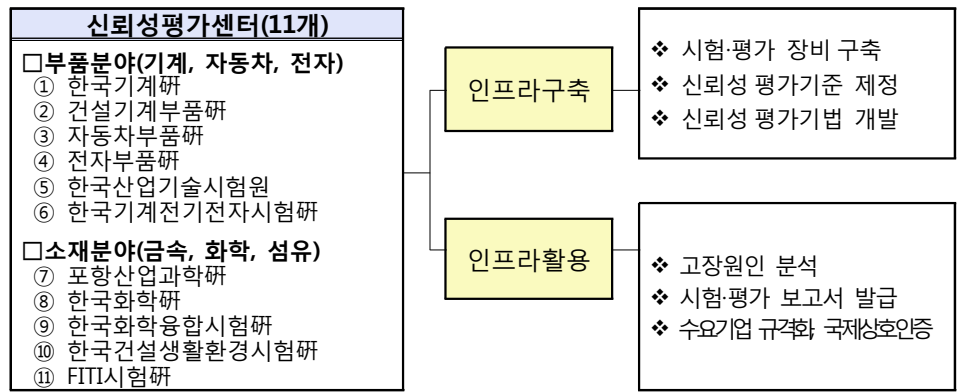
- 신뢰성 기술, 첨단 평가 장비를 이용하여 신뢰성 문제해결, 기술보급 및 확산, 인증 등 종합 기술 지원 서비스 제공
- * 금속 등 5개 분야(금속, 화학, 섬유,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11개 신뢰성 평가센터 (문의처 참고)

'신뢰성'이란?

-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시간 후에도 목표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 신뢰성평가센터 구축현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센터별 담당자를 통해 지원방법 및 절차 개별문의

지원규모 : 해당없음

문의처

분야	수행기관	수행부서	담당자	연락처
금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분석평가센터	강성 책임연구원	(054)279-6932
화학	한국화학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허규용 선임연구원	(042)860-770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김선 선임연구원	(02)2092-360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강미정 선임연구원	(042)723-3074
섬유	FIT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오정택 선임연구원	(02)3299-8148
전기 전자	전자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이주호 선임연구원	(031)789-728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정의효 선임연구원	(031)8084-544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항공국방기술센터 신뢰성팀	양일영 연구원	(055)791-3567
기계 자동차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연구센터	임신열 연구원	(042)868-7169
	자동차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임현택 팀장연구원	(041)559-3378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유영철 선임연구원	(063)447-2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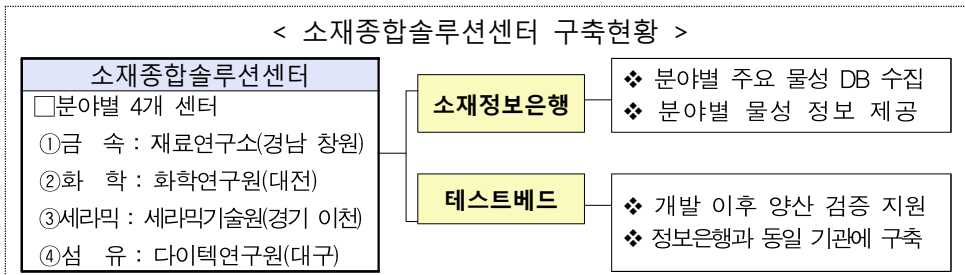
46. 소재 종합솔루션센터

지원대상

- 소재부품과 관련하여 기 구축 신뢰성 인프라(장비·기술·전문인력)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업

지원내용

- (소재정보은행) 소재개발 및 제품화에 필요한 핵심 물성정보, 심층 보고서, 특허정보, 기술·시장동향 등 제공
- (테스트베드) 파일럿 장비구축을 완료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파일럿 테스트 및 시제품 제작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센터별 담당자를 통해 지원방법 및 절차 개별문의

지원규모 : 해당 없음

문의처

분야	수행기관	수행부서	담당자	연락처
금속	재료연구소 (소재종합솔루션센터)	소재정보은행	박성준 기술지원	(055)280-3213
		테스트베드	박희범 행정원	(055)280-3131
화학	한국화학연구원 (소재종합솔루션센터)	테스트베드	조성근 책임연구원	(042)860-7911
섬유	다이텍연구원 (소재종합솔루션센터)	소재정보은행	장진우 전임연구원	(053)350-3747
		테스트베드	이지훈 전임연구원	(053)350-3748
세라믹	한국세라믹기술원 (소재종합솔루션센터)	소재정보은행	김경훈 책임연구원	(055)792-2773
		테스트베드	여동훈 수석연구원	(031)645-1301

47. 과기원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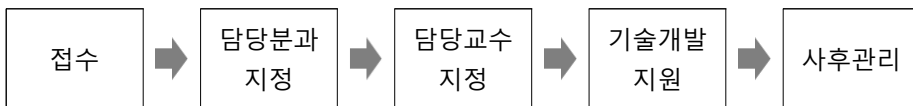
- 일본 수출규제 관련 159개 관리 품목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자문 분야 및 내용

- 관리품목과 관련된 애로 기술 진단 및 기업 현황 분석·연구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 국산 원천기술 개발 지원
- 자문단 : 관련 분야 100여 명의 전·현직 교수진으로 구성

첨단소재분과	화학·생물분과	항공·장비분과	전자·컴퓨터분과	기계·항공분과
팀장: 이혁모교수	팀장: 이영민교수	팀장: 이재우교수	팀장: 문재균교수	팀장: 이두용교수

지원절차



향후계획

- 동 자문단을 전국 4대 과기원*으로 확대하여 분야별 지역별 전문성을 토대로 기술자문 지원 예정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 대구경북, 광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확대

문의처 : KAIST 기술자문 전담 접수처

☎ 042-350-6119, smbrrnd@kaist.ac.kr

48.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 지원대상
 - 국내기업, 연구소, 대학교, 공공기관 등
- 지원 내용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우수 해외인력 발굴 및 채용 지원
- 유치 대상
 -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전문인력) 비자자격에 해당하면서,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경력 1년 이상 인재
 - 석·박사 인재 * 경력무관
 - 학위 미소지인 경우 해당경력 5년 이상 인재
- 수수료 : 중소기업은 무료 단, 대기업은 110만원/1명 기준
- 신청기간 : 수시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기업 → contactkorea.kotra.or.kr 으로 신청
▼	
인재발굴 및 정보 전달	■ 해외무역관, 해외전문 HR사 활용 인재 발굴 및 국내기업에 이력정보 전달
▼	
채용 진행	■ 국내기업, 해외인력 → 채용인터뷰, 이력확인, 고용계약 체결
▼	
후속 지원	■ 고용추천서 발급(비자신청 용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KOTRA 해외취업팀(02-3460-7387~8, contactkorea@kotra.or.kr)

49. 신성장기반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투자 기업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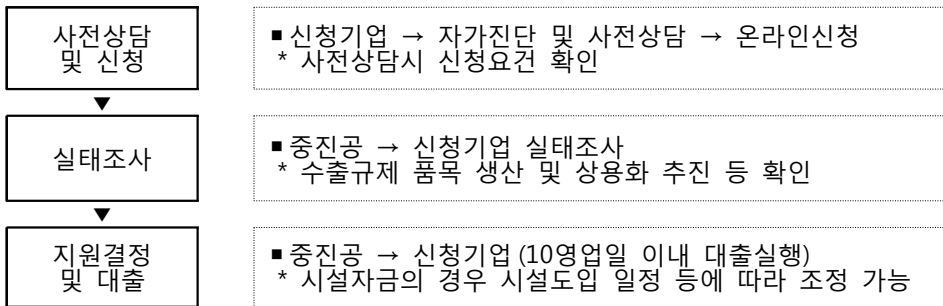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최대 10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시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대출금리 : 2.8% 내외(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신청기간 : 공고 시행일(8.9)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 구비서류

- ① 정책자금 용자신청서(정책자금 활용계획서)
- ②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시설자금 근거서류(견적서 및 계약서) 등

□ 지원규모 : 300억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분(지)부 ☎ 1357, www.kosmes.or.kr

50. 특허 기반 기술개발(IP-R&D) 전략, 지식재산권 사업화 등 지원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대상(예상) 품목을 직접 수입하는 업체 및 대체 기술 개발 업체

□ 지원내용

- (특허분석·전략) 기초 컨설팅, 핵심특허 대응, 대체기술개발 전략, 대체 공급선(연구자) 정보 등 제공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기관
100+α 핵심품목* 분야 신청기업	(기초 컨설팅) 선행특허검색, 교육 등(지역IP센터) (단기 특허분석) 특허회피전략 등(전략원, 3~4주) (정규 지원사업 우대) IP-R&D, 지식재산 창출지원, 특허바우처 등	특허전략원, RIPC
일반소재·부품·장비 분야 신청기업	(기초 컨설팅) 선행특허검색, 교육 등(지역IP센터) (정규 지원사업 우대) IP-R&D, IP 창출 지원 등	특허전략원, RIPC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학·연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허분석 제공 * 탄소소재, 화장품소재, 로봇핵심부품 등 100+α 핵심품목별 특허동향 보도자료 배포 (주요특허 리스트 제공) * 품목별 담당심사관 지정	특허청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8.5) 100대 전략품목 + 향후 R&D부처 추가 합의 품목

- (특허 사업화) 산·학·연이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 특허에 대한 사업화 촉진

유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기관
기업 보유 특허	소재·부품 분야 우수 특허기술 보유 중소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IP금융) 및 특허 활용전략 컨설팅	발명진흥회
學·研 보유 특허	대학·공공연 우수 소재·부품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특허 기술중개(특허거래전문관)	특허전략원, 발명진흥회

- (특허분쟁 대응) 분쟁에 휘말렸거나 분쟁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공익변리사, 특허분쟁 컨설팅 등 지원* (지식재산보호원)
- * 지재권 분쟁예방·분쟁대응 상담, 소재·부품 분야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등
- (심사제도) 소재·부품·장비 지재권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등 심사제도 컨설팅 제공, 필요시 현장의견을 수렴해 관련 제도 개선
- * 현행은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첨단소재 특허출원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신특허분류를 부여받은 출원 등에 대해 우선심사 허용 중

□ 신청절차

- (신청방법) 전국 지역 IP 센터* 또는 소재부품수급센터에 신청
- *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 23개 지역지식재산센터
- (구비서류) ① 신청서*(소정 서식), ② 피해사실 입증서류**
- * 서식 다운로드: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2.ripc.org)
- ** (예시) 일본 소재 수출업체의 개별허가 신청서 사본, 규제대상품목의 기존 거래 내역 증빙자료(계약서 등), 제3국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

□ 문의처 :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 1661-1900

센터명	운영기관	연락처	센터명	운영기관	연락처
서울	(재)서울산업진흥원	02-2222-3860	경북	포항상공회의소	054-274-5533
인천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82	구미	구미상공회의소	054-454-6601
경기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	031-500-3043	안동	안동상공회의소	054-859-3093
수원	수원상공회의소	031-244-8321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055-210-3085
부천	부천산업진흥재단	032-663-6601	진주	진주상공회의소	055-762-9411
강원	강원도경제진흥원(원주)	033-749-3326	대구	대구상공회의소	053-242-8079
춘천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033-264-6580	부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051-645-9683
강릉	강릉상공회의소	033-643-4412	울산	울산상공회의소	052-228-3087
태백	태백상공회의소	033-552-5555	울산TP	(재)울산테크노파크	1877-8972
충북	청주상공회의소	043-229-2732	전북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전주)	063-252-9301
충주	충주상공회의소	043-843-7005	전남	목포상공회의소	061-242-8587
충남	충남북부상공회의소(천안)	041-559-5746	광주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062-954-3841
세종	한국발명진흥회 세종지부	044-998-1000	제주	제주상공회의소	064-755-2554
대전	(재)대전테크노파크	042-930-8420			

51.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부품기업법상 소재·부품기업)* (계열대기업 가능)

* [별첨1]을 참조하되, 창업, 사업재편·사업다각화 등을 통한 동분야 신규 진출기업 포함

지원내용

- (운용기간) 3년('19년~' 21년)
- (자금용도) 시설자금
- (대출기간) 10년 이내
- (여신통화) 원화, 미달러화(US), 엔화(¥), 유로화(€)
- (금리우대)

구 분	기활법 사업재편*		일 반	
	중소·중견	계열대	중소·중견	계열대
원 화	△0.50%p	△0.20%p	△0.40%p	△0.20%p
외 화	△0.30%p	△0.10%p	△0.20%p	△0.10%p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승인(완료)기업
(중소·중견은 10bp 추가우대)

- (유의사항) 기한연장 및 기승인 여신의 동 자금으로 재원변경(한도 반납 후 재승인 포함) 불가 (기활법 승인에 따른 재원변경은 가능)

문의처 : 산업은행 중소기업금융실 ☎ 02-787-5624(또는 5602)

52. 연구개발 운전 자금 지원

1] 기업은행

□ 지원대상

-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품소재 관련 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요건 모두 해당하는 기업
 - 기업은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등급 T6이상
 - 기업은행 자체 신용등급 BBB+ 이상

□ 지원내용

- (지원부문) 운전자금*

* 단,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자금에 한함

연구개발 (R&D)	- 연구인력 인건비, 기술인증 및 특허권 등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 교육훈련비, 기술지도비, 시험검사비 등
사업화	- 신기술 사업화, 판로확보 자금 등

- (지원한도) 동일 인당 5억원 이내
- (금리우대) 최대 1.0%p 감면
- (대출기간) 1년 이내(최장 5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 단, 신용보증서, 지급보증서, 예금 담보여신은 최장 8년 이내 기간연장 가능

□ 문의처 : 기업은행 ☎ 1566-2566 및 전국 영업점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품목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생산, 상용화하려는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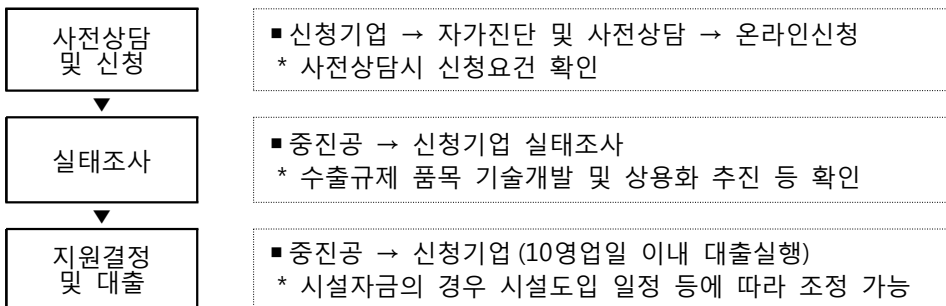
*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특허 등록, R&D성공 등 신청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최대 3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금리 : 2.3% 내외(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신청기간 : 공고 시행일(8.9)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 구비서류

- ① 정책자금 융자신청서(정책자금 활용계획서, 개발기술사업화 신청서)
- ②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술개발 실적(특허등록원부, R&D성공판정공문 등)

□ 지원규모 : 200억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1357, www.kosmes.or.kr

53. 연구개발 시설투자 촉진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구매 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 수출중단 또는 축소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추진하는 기업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소재·부품 기업으로 향후 동 법 개정으로 장비 포함시 소재·부품·장비로 확대

□ 지원내용

- (지원한도) 실소요금액의 90% 이내
- (금리우대) 최대 1%p 감면
- (대출기간) 최대 10년(R&D) / 15년(시설투자)

□ 문의처 : 수출입은행 기업금융1,2부 ☎ 02-6255-5413, 5426
중소중견금융1,2부 ☎ 02-3779-6427 / 02-6255-5304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65, 5273, 5278

4 피해기업 지원 ①세정지원

54. 피해기업 중소기업 세정지원

□ 지원대상

유형1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유형2	①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②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 지원내용

①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유형1, 유형2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신청시 적극 수용
- (경정청구 즉시 처리) 피해 중소기업이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기존2개월 → 1개월)
- (환급금 조기지급)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

②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 : 유형1

- (조사유예 등 실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
 -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고,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간편조사
 - *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의 경우 '유형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신청도 적극 수용
- (신고내용 확인 제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 이미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유예
- (과세자료 처리보류)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 처리를 보류(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 다만,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

□ 신청방법

-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접근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 클릭 → 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중지'로 조회

□ 문의처 :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세정지원센터

세정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서울청 법인납세과	팀장 김광민	02-2114-2902
중부청 법인납세과	팀장 조갑신	031-888-4832
부산청 법인납세과	팀장 박희술	051-750-7432
인천청 법인납세과	팀장 김은기	032-718-6472
대전청 법인납세과	팀장 성보경	042-615-2482
광주청 법인납세과	팀장 김덕호	062-236-7462
대구청 법인납세과	팀장 이동일	053-661-7462

※ 세무서 세정지원센터 : 관할세무서 법인납세과 (재산법인납세과, 세원관리과)
 ⇒ 연락처는 관할세무서 홈페이지 참조

55. 관세 납기연장 · 분할납부 · 환급 등 지원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대상 품목을 직접 수입하는 업체
- 지원내용
 - (납기연장 · 분할납부) 납부계획서 제출 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無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 *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및 관세 등 조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단기 체납, 체납 후 성실 분할납부는 제외)
 - (관세환급금 신속지급) 환급 신청건 P/L(Paperless) 전환, 신청 당일 환급결정 및 지급(先지급 後심사)
 - (관세조사 유예 · 연기)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 피해구제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유예, 조사 중인 경우 관세조사 연기
 - *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포함
- 신청방법
 - (신청장소)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평택직할세관의 경우 통관지원과)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 (구비서류) ① 신청서*(소정 서식), ② 피해사실 입증서류**
 -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뉴스/소식>새소식>공지사항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기업피해 접수창구 운영 안내"
 - ** (예시) 일본 소재 수출업체의 개별허가 신청서 사본, 규제대상품목의 기존 거래 내역 증빙자료(계약서 등), 제3국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
- 문의처

세관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인천본부세관	032-452-3639	032-891-9203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78/1389	02-548-0211	seoulsupport@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52	051-620-1118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83	053-230-5599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2	062-975-3113	gwangjufta@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042	031-8054-7046	fta016@korea.kr

56. 기업부설 연구소 지방세 감면

□ 지원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기업

□ 지원내용

-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35% 감면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
-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35% 감면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추가 감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상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에 10%p 추가하여 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 ※ 현재 위 '추가 감면'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 ('19.8.14.~9.10.),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20년~) 시행 예정
 - '추가 감면' 외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은 현재도 시행중(~'19년)

□ 유의사항

-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정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은 2년) 이내에 「기초연구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신청방법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지방세 감면 신청

□ 문의처

부서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3	044-204-8970	swj2000@korea.kr
전국 세무부서	1577-5700	-	-

57. 지방세 납기연장, 세무조사 연기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지원
- 지원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
 -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 ※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 (기타 지원) 지방세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 신청방법
 - (신청장소) 납세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세무민원실)
 - (구비서류) ① 신청서(관할 시·군·구 비치), ② 피해사실 입증서류*
 - * (예시) 일본소재 수출업체의 개별허가 신청서 사본, 규제대상품목의 기존 거래 내역 증빙자료(계약서 등), 제3국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
- 문의처 : 납세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세무민원실)

4 피해기업 지원 ② 금융지원

58.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 지원대상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이하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 대상기업 세부기준

- ① 2018.1.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 ② 향후 수입·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 ③ ①·②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다만, 수출규제 이전에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일괄 만기연장에서 원칙적 제외 →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이후 만기연장 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 추진
- * 산은, 기은, 수은, 신·기보, 무보, 중진공

□ 문의처

- 거래 금융회사 등의 본점 또는 가까운 지점에 전화문의 후 직접신청

은행명	대표번호	홈페이지
산업은행	02) 787-4000	www.kdb.co.kr
기업은행	1566-2566	www.ibk.co.kr
수출입은행	02) 3779-6114	www.koreaexim.go.kr
신용보증기금	1588-6565	www.kodit.co.kr
기술보증기금	1544-1120	www.kibo.or.kr
무역보험공사	1588-3884	www.ksure.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www.kosmes.or.kr

59.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 지원

□ 지원대상

- 온렌딩 기본 대상이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소재부품기업법상 소재·부품기업)* (계열대기업 제외)

* [별첨1]을 참조하되, 창업, 사업재편·사업다각화 등을 통한 동분야 신규 진출기업 포함

- ※ (온렌딩 기본 대상) 금감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7~11등급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보통 신용등급 BBB~B0에 해당)

[표준신용등급 체계]

등급	예상부도율	등급	예상부도율
1등급	0.00%이상~0.03%이하	9등급	1.35%초과~2.50%이하
2등급	0.03%초과~0.05%이하	10등급	2.50%초과~5.50%이하
3등급	0.05%초과~0.10%이하	11등급	5.50%초과~10.00%이하
4등급	0.10%초과~0.25%이하	12등급	10.00%초과~20.00%이하
5등급	0.25%초과~0.35%이하	13등급	20.00%초과~100.00%미만
6등급	0.35%초과~0.50%이하	14등급	100.00%(회수의문)
7등급	0.50%초과~0.75%이하	15등급	100.00%(추정손실)
8등급	0.75%초과~1.35%이하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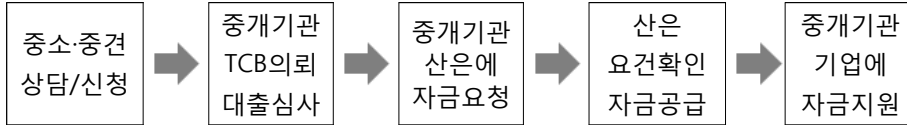
- (지원한도)

기업규모	건별 한도	기업별한도
중소	150	300
중견	200	400

- (금리우대) 대출기준금리 0.45%p 인하(변동주기 : 1년)
- (대출기간) 1년 이상 10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상환) 연 4회 원금균등 분할상환*, 이자 연 4회 후취
* 원리금 상환기일 : 3.15일, 6.15일, 9.15일, 12.15일
- (연체이율) 온렌딩대출금리 + 3%, 15%가 상한

□ 지원절차



□ 문의처 : 거래은행 여신담당자

60.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부품기업법상 소재·부품기업)* (계열대기업 가능)
- * [별첨1]을 참조하되, 창업, 사업재편·사업다각화 등을 통한 동분야 신규 진출기업 포함

□ 지원내용

- (운용기간) 3년('19년~' 21년)
- (자금용도) 시설자금
- (대출기간) 10년 이내
- (여신통화) 원화, 미달러화(US), 엔화(¥), 유로화(€)
- (금리우대)

구 분	기활법 사업재편*		일 반	
	중소·중견	계열대	중소·중견	계열대
원 화	△0.50%p	△0.20%p	△0.40%p	△0.20%p
외 화	△0.30%p	△0.10%p	△0.20%p	△0.10%p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승인(완료)기업
(중소·중견은 10bp 추가우대)

- (유의사항) 기한연장 및 기승인 여신의 동 자금으로 재원변경(한도 반납 후 재승인 포함) 불가 (기활법 승인에 따른 재원변경은 가능)

□ 문의처 : 산업은행 중소기업금융실 ☎ 02-787-5624(또는 5602)

61.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1 산업은행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부품기업법상 소재·부품기업)* (계열대기업 제외)
* [별첨1]을 참조하되, 창업, 사업재편·사업다각화 등을 통한 동분야 신규 진출기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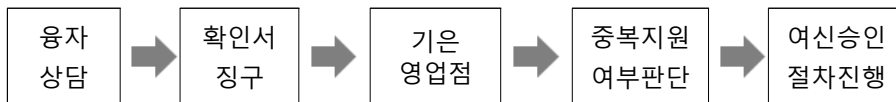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용도 및 한도) 시설자금 2,500억원
- (여신통화) 원화, 미달러화(US\$), 엔화(¥), 유로화(€)
- (금리우대)

기업규모	원화	외화
중소	△0.7%p	△0.3%p
중견	△0.6%p	△0.2%p

- (운용기간) 3년('19년~' 21년)
- (대출기간) 15년 이내
- (여신비율) 총 소요자금(사업비)의 8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기업은행과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징구 후 취급

□ 문의처 : 산업은행 중소기업금융실 ☎ 02-787-5624(또는 5602)

2 기업은행

- 전통 주력산업^{주1)} 및 新성장 분야^{주2)} 중소기업

주1) 전통 주력산업

- (19년 집중지원 대상 4대 주력산업) 자동차 / 조선 / 디스플레이 / 석유화학
- (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사업군), 소재·부품·장비 /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 자동차·조선 / 섬유·가전

주2) 3대 전략투자분야, 8대 핵심선도산업 분야,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5G 전략산업, 4대 유망 서비스업,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 지원내용

- (운용기간) 3년('19년~' 21년)
 - (금리우대) 최대 0.5%p 감면
 - (지원한도) 동일 기업당 최대 250억원
 - (시설자금) 250억원, (운전자금) 30억원^{주)}
- 주) 단, 동 상품으로 지원받은 시설자금의 20% 이내

□ 문의처 : 기업은행 중소기업금융실 ☎ 02-787-5624(또는 5602)

62.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1] 기업은행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기업

- ① 2018.1.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 ② 향후 수입·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 ③ 상기 ①, ②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 지원내용

- (대출종류) 중소기업자금 · 일반자금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제외)
- (지원한도) 동일 기업당 3억원 이내
- (금리우대) 최대 1.0%p 감면
- (대출기간) 1년 이내(최장 3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 (필요서류)

대상 구분	확인서류 예시
① 수입·구매 ^{주)} 기업	- (수입) 수입신고필증 등 - (구매)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등
② 수입·구매 예정기업	- Sales contract, 구매계약서 등
③ 상기 ①, ②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	-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①, ②번 기업(거래수주기업)의 피해 품목 확인용

주) 구매기업 : 수입총판 등을 통해 수출제한 품목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기업

- 문의처 : 기업은행 ☎ 1566-2566 및 전국 영업점

2 산업은행

□ 지원대상

- 산업은행 기존 거래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기업
 - ※ 지원 불가 대상 : 계열대기업, 부실기업(구조조정 대상·신용등급 CC이하 등)

□ 지원내용

- (용도 및 통화) 운전자금, 원화 및 외화
- (대출기간) 1년 이내, 연내 1회
- (유의사항)
 - 기존에 산업은행과 거래중인 기업만 대상
 - 기한연장(만기도래시 동 자금으로의 당행대환 포함) 불가
 - 타행대환을 위한 동 자금 사용 불가 (대출상환용도 금지)

□ 문의처 : 기존 거래중인 산업은행 영업점 담당자 앞 신청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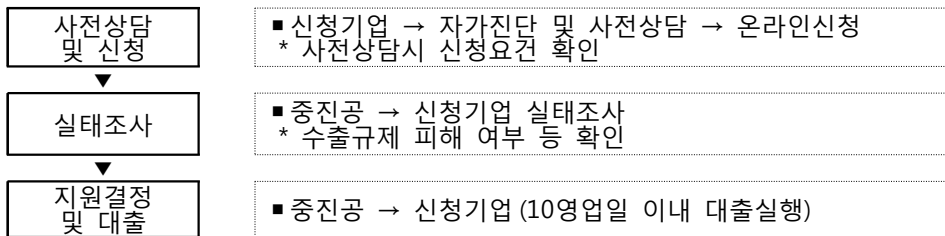
-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 중소기업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의 생산차질로 인해 거래가 감소한 협력 중소기업*
 - * 제조업(KSIC 10~34) 영위기업에 한함
 - * 1~2차 협력업체 또는 1~2차 협력업체와 거래비중 50%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일본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중 일본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수출 피해기업(수출취소 등)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금리 : 2.8% 내외(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신청기간 : 공고 시행일(8.9)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 구비서류

- ① 정책자금 용자신청서(정책자금 활용계획서, 일시적경영애로 신청서)
- ② 관세청 수입실적 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전년도 동월 또는 신청 전전월) 등 피해 증빙이 가능한 서류

□ 지원규모 : 500억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1357, www.kosmes.or.kr

63.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① ~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18.1.1 이후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하여 수출규제 해당품목을 수입(직접 수입 기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간접수입기업)
- ② 수출규제 해당품목을 수입·구매 예정기업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 ③ 정부, 지자체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 지원규모 : 2,000억원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0.5% 이내
- 보증기간 : 최대 7년 이내
- 대상채무 : 운전자금

□ 신청기간 : '19.8.16~12.31(혹은 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영업장 소재지의 가까운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방문 후 보증상담 및 신청 →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 대출 실행

□ 문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64. 영세 관광사업자 신용보증

지원대상

- 국내·국외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관광사업자* 중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4~8등급) 기업

* 여행업, 휴양업, 호텔업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업종

지원규모 : 300억원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 보증기간 : 5년
- 대상채무 : 운전자금
- 대출금리 : 1.5% 내외 (변동금리)

신청기간 : ~ 10.31 (혹은 자금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 영업장 소재지의 가까운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방문 후 보증상담 및 신청 →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 대출 실행

문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6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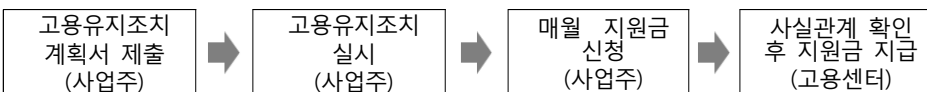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을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시행규칙 제25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①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전부터 4개월전까지의 기간(기준기간) 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

□ 지원절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www.moel.go.kr

참고 1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현장지원반 핫라인**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산업부	산업정책과	02-6050-7521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044-200-2222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044-215-27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	044-202-6853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담당관	042-481-6816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772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530	
금융위	산업금융과	02-2100-2862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1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과	042-481-8184	
행정안전부	일자리경제과	044-205-3904	
국세청	법인세과	044-204-3312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044-201-3658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3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 관 명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2110-6350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5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5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360-9194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201-6800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팀	032-450-1132	
대전.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865-6100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2-210-0062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033-260-1600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043-230-5300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팀	063-210-6482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055-268-2511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담당부서	사 무 실	비고
서울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02-2133-5214	
인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032-440-4281	
대구	경제국 경제정책관	053-803-3235	
부산	일자리경제실 혁신경제과	051-888-7712	
대전	일자리경제국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702	
울산	혁신산업국 화재소재산업과	052-229-7670	
광주	일자리경제실 기업육성과	062-613-3861	
세종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044-300-4142	
경기	경제기획관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2990	
강원	글로벌투자통상국 일본구미주통상과	033-249-2093	
충남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041-635-3318	
충북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043-220-3484	
경북	일자리경제산업실 국제통상과	054-880-2714	
경남	산업혁신국 투자통상과	055-211-3284	
전북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	063-280-3225	
전남	경제에너지국 혁신경제과	061-286-3840	

□ 협회·단체 등

소속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대한상의	산업정책팀	02-6050-3381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	02-2124-3162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02-3275-3094	
경영자총연합회	경제조사본부	02-3270-7328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정책협력실	02-6000-5202	
KOTRA	신북방팀	02-3460-7656	
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팀	070-8895-7841	
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사업본부	02-399-6584	
전략물자관리원	제재분석실	02-6000-6432	
철강협회	기획홍보실	02-559-3512	
기계산업진흥회	통상비즈니스센터	02-369-7842	
반도체산업협회	통상협력팀	02-570-5210	
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	02-3668-6151	
전자산업진흥회	산업정책실	02-6388-6170	
전지산업협회	기획조사팀	02-3461-9408	
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	02-3660-1882	
로봇산업협회	전략기획팀	02-780-3144	
디스플레이산업협회	경영전략본부	02-3014-5708	
정밀화학산업진흥회	대외사업부	02-2088-7257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정책기획팀	02-2112-8067	

□ 금융기관

소속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금감원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 6번 선택 02-3145-8405 02-3145-8419	
	부산울산지원	051-606-1734	
	대구경북지원	053-760-4008	
	광주전남지원	062-606-1635	
	대전충남지원	042-479-5116	
	인천지원	032-715-4808	
	경남지원	055-716-2328	
	제주지원	064-746-4202	
	전북지원	063-250-5004	
	강원지원	033-250-2804	
	충북지원	043-857-9103	
	강릉지원	033-642-1905	
산업은행	중소중견금융실	02-787-5602 02-787-5624	
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02-3779-6253	
기업은행	기업개선부	02-729-6983 02-6322-508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51 055-751-954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기획부	042-480-4030 042-480-4039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	053-430-4496 053-430-4497	
기술보증기금	보증운영실	051-606-7475 051-606-7457	
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02-399-6584	

소속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농협은행	여신기획부	02-2080-7617 02-2014-1574	
신한은행	기업고객부	02-2151-2444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02-2002-4833 02-2002-5349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	02-2002-1551 02-2002-1622	
국민은행	기업여신심사부	02-2073-3804	
SC은행	기업여신심사부	02-3702-4412 02-3702-4152	
씨티은행	리스크기획부	02-3455-2827 02-3455-2866	
수협은행	기업그룹	02-2240-0253 02-2240-0256	
부산은행	여신기획부	051-620-3411 051-620-3438	
광주은행	영업추진부	062-239-6540 062-239-6541	
전북은행	영업추진부	063-250-7335 063-250-7632	
경남은행	여신지원본부	055-290-8616 055-290-8675	
대구은행	여신심사부	053-740-2301 053-740-2398	
제주은행	여신기획부	064-720-0175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서울 (금천구)	02) 2106-7442	충북 (청주시)	043) 230-6800	전남 (무안군)	061) 280-8031
서울동남부 (서초구)	02) 2023-4314	충북북부 (충주시)	043) 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 729-1556
서울북부 (중구)	02) 769-6419	전북 (전주시)	063) 210-9923	부산 (사상구)	051) 630-7400
인천 (연수구)	032) 837-7041	전북서부 (군산시)	063) 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 745-5926
인천서부 (서구)	032) 560-2360	대구 (대구시)	053) 606-8400	울산 (울산시)	052) 703-1100
경기 (수원시)	031) 260-4900	경북 (구미시)	054) 476-9340	경남 (창원시)	055) 270-9753
경기동부 (성남시)	031) 760-9000	경북동부 (포항시)	054) 288-7350	경남동부 (김해시)	055) 310-6600
경기서부 (안산시)	031) 783-0600	경북남부 (경산시)	053) 603-3325	경남서부 (진주시)	055) 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 920-6700	강원 (춘천시)	033) 269-6900	제주 (제주시)	064) 754-5154
대전세종 (대전시)	042) 281-3731	강원영동 (강릉시)	033) 655-9374		
충남 (천안시)	041) 589-4545	광주 (광주시)	062) 600-30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참고 2

전략물자 전문판정 신청 방법 안내

[전문판정 신청 방법]

⇒ Yestrade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 메인화면 중앙의 **‘전문판정 신청’** 을 클릭합니다.




⇒ ‘**전문판정 신청방법 > 단건신청**’ 을 클릭합니다.

(여러 건을 일괄로 신청하려면 일괄등록 클릭하여 진행하며, 진행방법은 ‘전문판정 일괄등록 안내’ 파일 참조 바랍니다.)


전문판정 신청

☛ > 판정/허가 신청 > 전문판정 > 전문판정 신청


전문판정 신청방법



단건신청



일괄등록



한 건을 신청하기 원하시면 단건신청을, 여러 건을 한 번에 신청하기 원하시면 일괄등록을 선택해 주세요.
일괄등록은 산업용만 가능합니다. 군용은 단건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 ‘**산업용 전문판정 신청 > 전략물자 전문판정 신청**’ 을 클릭합니다.


(수출품목이 산업용(이중용도)인지 군용인지, 또한 물자인지 기술 인지를 확인 후 알맞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전문판정 신청


☛ > 판정/허가 신청 > 전문판정 > 전문판정 신청

산업용


군용




전략물자



전략기술



군용전략물자



군용전략기술

① <1단계 기본정보> 입력

⇒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가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현 단계에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기본정보 등록 *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하여야 합니다.

업체정보 변경	사업자등록번호 *	<input type="text"/>	조회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상호 *	<input type="text"/>	*업체명을 기재해주세요.
	무역업 등록번호	<input type="text"/>	*무역업 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대표자 성명 *	<input type="text"/>	*업체 대표자 성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소 *	<input type="text"/>	
	출세지 주소	<input type="text"/>	*출세지가 있을 경우 출세지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전화번호 *	<input type="text"/>	*대표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FAX	<input type="text"/>	*FAX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상호(영문)	<input type="text"/>	*영문 업체명을 기재해주세요.
	대표자(영문)	<input type="text"/>	*영문 대표자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소(영문)	<input type="text"/>		
담당자	담당자 성명 *	<input type="text"/>	*위임 받은 업체의 실무담당자 성명을 기재해주세요.
	담당자 성명(영문)	<input type="text"/>	*위임 받은 업체의 실무담당자 영문 이름을 기재해주세요.
	담당자 전화번호 *	<input type="text"/>	*연락가능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담당자 휴대폰	<input type="text"/>	*연락가능한 담당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담당자 E-mail	<input type="text"/>	*발송가능한 담당자 이메일주소를 기재해주세요.
	SMS 찰프수신	<input type="text"/>	*SMS 찰프 수신자 휴대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예시) 010-0000-0000, 011-1111-1111 (*로 구분)
	E-mail 찰프수신	<input type="text"/>	*찰프 수신자 이메일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예시) aaa@aaa.com, bbb@bbb.com (*로 구분)

저장 후 다음단계 이동

※ 주의: 추후 보완요청 시 담당자와 유선 상 안내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오니 **담당자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2단계 품목/기술정보> 입력

⇒ 판정 시 중요한 항목입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빠짐없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품목의 분류를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품목별 유의사항 및 추가답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답변서를 내려받아 정확히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기본정보
2단계 품목/기술정보
3단계 신청서정보

※ 완료예정일 : 판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법적공휴일 제외)

● 품목 정보 등록
*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분류	산업용 전략물자 전문판정 신청
신청정보	신청품목의 분류 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공작기계, 측정기계(압력변환기, 변위측정기 등) <input type="radio"/> 일반기계(베어링, 내성로, 로봇, 정수압프레스 등) <input type="radio"/> 정보통신 (네트워크장비, 광섬유, 통신장비) <input type="radio"/> 정보보안 (라우터, 스위치, 필터이, 소프트웨어) <input type="radio"/> 전자 (집적회로, 고에너지 저장장치, 반도체 생산설비, 신호분석 장비 등) <input type="radio"/> 컴퓨터 (컴퓨터(서버등) 및 관련 장비, 전자조립체, 디지털 차동분석기 등) <input type="radio"/> 센서 및 레이저 (레이저, 센서, 광학장비, 레이더, 카메라 등) <input type="radio"/> 금속소재 (열강제품, 비열금속제품, 배관소재류, 금속분말류 등) <input type="radio"/> 기타소재 (세라믹제품, 무기(유리 등)섬유 및 복합소재, 소재 생산장비 등) <input type="radio"/> 화학 (석유화학제품 및 수지, 화학물질, 유기(탄소 등)섬유 및 복합소재, 윤활유, 폭발물 등) <input type="radio"/> 생물 (의약품, 의료장비, 진단키트, 바이러스, 독소, 세균, 병원균 등) <input type="radio"/> 원자력분야(UAE 원전 수출품목, 요르단연구로 수출품목 등) <input type="radio"/> 항공우주 및 추진 (로켓, 미사일, 무인항공기, 인공위성, 미사일 시험/검사 장비 등) <input type="radio"/> 해양 (갈수정, 수상선 및 관련 시스템, 수중조명장치, 수중로봇 등) <input checked="" type="radio"/> 항공설비(발브, 펌프) <input type="radio"/> 항공설비 (반송기, 저장탱크, 열교환기, 교반기 등) <input type="radio"/> 합법 및 항공전자 (위성항법 시스템, 비행관련 시스템, 관련센서 및 측정기) <p style="color: #e91e63; font-size: small;">! 품목 분류가 어려운 경우 유사한 품목분류로 선택</p>

회공설비(발브, 펌프)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품목이 아래 품목의 범주에 포함 된다면 해당 파일에 추가 답변서 첨부파일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파일
발브	W13
펌프	W13

1. 품목정보의 모델명에는 첨부된 기술사양 자료에서 확인가능한 모델명(Tag No, Item No, model No 등)을 모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는 표현은 안됨)

2. 커넥로그 첨부 시, 해당되는 품목에 표시하여 제출모에 기재(레이저 등) 바랍니다.

3. 유체가 되는 부분(접착부)의 재질 검증(ex. sus304)에 대한정보가 필요합니다.

⇒ **품목정보**를 입력합니다. 향후 판정서에 출력되는 부분이므로 물품명, 모델명 등 모든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품목정보	HS번호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 관세청 제출자료와 동일한 HS번호로 입력
	HS품명		<input type="text"/>	
	물품명 *		<input type="text"/>	[!] 신청품목의 일반적인 물품명 혹은 제품명 기재 (예: 게이트발브)
	형식 및 규격	모델 및 형식 *	<input type="text"/>	[!] 첨부파일에서 확인가능한 신청품목의 고유모델명 기재 (예: AB34X-35)
		규격 및 성능 *	<input type="text"/>	[!] 신청품목의 특성 기재(주요재질, 구성물질, 사양 등) (예: body재질-A105+PFA lining, 호칭치수-5")
	용도 *		<input type="text"/>	[!] 사용되는 산업군 혹은 장비군 등을 포함한 상세목적 및 용도 기재(예: 반도체 장비의 약액공급 및 차단용도)
	사용처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일반수출입물자"/>	[!] 통관부 관련 판정인 경우 대북반출입물자를 선택하세요.

⇒ **첨부파일**을 추가합니다. 카탈로그, 도면, 추가답변서 등 판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신청품목의 기술적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견적물자 판정서에는 ECCN코드(美)와 같은 타 정부기관에서 판정받은 결과 또는 자기판정서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요청을 하게 되고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허가기간 단축을 위해 첨부서류제출 누락 및 제출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추가"/>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첨부파일 등록도 가능합니다. [!] 주의) 첨부파일의 파일명에는 특수문자 (&, #, ~ 등) 사용 불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유형 선택"/>	<input type="button" value="제출메모"/>	<input type="button" value="첨부된 파일명"/>

※ 주의: 품목정보란에 신청품목의 **정확한 물품명 및 모델명, 용도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기재 또는 첨부 파일과 상이하게 기재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판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③ <3단계 신청서정보> 전송

⇒ 마지막 단계로 1, 2단계 작성내용을 **최종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을 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접수가 완료되며, 신청서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1단계 기본정보		2단계 품목/기술정보		3단계 신청서정보	
----------	--	-------------	--	-----------	--

● **판정결과공개여부**

공개여부 비공개 전체공개 부분공개 **저장** **이력보기**

● **기본정보**

판정신청번호		미결수	신청서 복사	
신청정보 (업체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208208902	무역업등록번호	
	상호	전학물자관리원	상호(영문)	
	대표자 성명	김인관	대표자 성명(영문)	
	FAX		신청자ID	hanglara
	전화번호	02-6000-6400	홈페이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삼성동) 511 트레이드 타워 2305호		
주소(영문)				
담당자	담당자 성명	한연진	담당자 성명(영문)	
	담당자 E-mail		담당자 전화번호	02-6000-6494
	SMS 참조수신		담당자 휴대폰	
	E-mail 참조수신			
업무대행	업무대행기관	전학물자관리원	업무대행자	한연진
	업무대행자 전화번호	02-6000-6400	업무대행자 E-mail	hanglara@naver.com
	업무대행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삼성동) 511 트레이드 타워 2305호		

● **품목/기술정보**

신청정보	신청서 분류	신입용 전학물자	
	신청품목의 분류	소재 (금속/세라믹 제품, 무기(유리 등)섬유 및 복합소재, 배관소재, 소재 생산장비 등)	
	신청일	2014/07/01	
	판정완료(예정)일		
	진행상태	작성중 ()	
품목정보 기술서보기	HS번호	8481400000	
	HS품명	인전벨트	
	물품명	벨트2014	
	형식 및 규격	모달 및 형식	벨트2014
		규격 및 성능	벨트 규격 및 성능
	용도	플랜트 설계	
	사용처	일반수출입물자	

기술사양서는 신청품목의 기술스펙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십시오.
 첨부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하나의 파일로 합쳐서 작성하신 뒤, 1개의 파일로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문서)는 택배,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미 제출 시 신청서를 반려 또는 정정요청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정보	첨부된 파일	제출번호
	매뉴얼, 키달로그 또는 사양서 등 벨트2014기술사양서.hwp	

기본정보수정 품목/기술정보수정 신청서 삭제 **신청서 제출** 목록

참고 3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1 서울특별시

□ 지원대상

- 수출규제 대상업종 직, 간접 피해기업
-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해 R&D 투자를 행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① (용자확대)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금 2천억원 확대 운영
 - 대상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피해기업 (직접 + 간접 + 국산화 추진)
 - 지원조건 : 한도 5억원, 보증비율 100%, 금리 1.5%, 보증료 1.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② (매출채권보험) 피해업종 매출채권 보험료 신규지원(1조원 보장)
 - 대상 : 일본 수출규제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기업 및 해당 기업과 매입·
매출 거래가 있는 기업으로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 보험한도: 보험계약자 50억원, 구매자(중소기업 70억원, 중견 100억원)
 - 지원방법: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시 재정으로 지원
- ③ (수출보증보험) 수출 신용보증보험 대상 확대(1,000건 → 3,000건)
 - 대상: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추진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약
 - 지원종목: 수출보험 3종, 수출신용보증 4종
- ④ (세제지원) 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
 - 대상: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피해기업
 - 세부내용 :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연기, 지방세 감면,
기타 지원
- ⑤ (R&D지원) 기술상용화 R&D 확대지원
 - 대상: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해 R&D 투자를 행하는 중소기업
 - 정부·대학·기업 공동조사 후 대상 분야 파악, 지원
 - 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계 지원책 마련

□ 신청방법

- (신청장소) 각 문의처에 접수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용자확대	① 수입기업: 수입신고필증, 수입실적증명서 등 ② 구매기업: 매입세금계산서, 물품거래계약서 등 ③ 제조·판매·유통기업: 납품확인서, 납품실적증명서, 물품거래계약서 등
수출보증보험	① 개별보험: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 수출자 은행 원화계좌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확인서 ②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정보활용동의서, 신청기업 정보가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확인서
세제지원	관련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내역서, 피해사실입증자료(매출장, 대손분개장, 미수채권관리대장 등)

□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용자확대	서울기업지원센터	02-2133-3119
매출채권보험(8.28 이후)	신용보증기금	미정
수출보증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02-399-5308
세제지원	기업 소재 자치구 세무과	
R&D지원	미정	미정

2 부산광역시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기업

지원내용

- ① 수출규제 상담 및 피해지원센터 운영(2개소 :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상의)
- ② 수출입 바로지원센터 운영(일본 오사카 무역사무소 내)
 - 허가서류 및 절차지원 피해기업 지원, 통번역서비스 및 현지전문가 자문 제공
- ③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특례보증 지원 : 100억원 규모
- ④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 지방세 납부·징수 등 연장·유예(최대1년), 세무조사 연기 등
- ⑤ 수입선 다변화 지원
 - 수입국 다변화 기업 지원사업, 글로벌 소재부품 구매 사절단 파견, 정밀기계류 등 투자유치 IR 추진(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 등)
- ⑥ 관광산업 지원
 - 지역관광사업자 자금 지원(보증한도 5천만원), 관광업계 동향 상황 관리반 운영, 해외시장 다변화 및 국내시장 확대 홍보·마케팅

신청방법

- 피해(예상)기업의 신청, 필요시 지방세 감면 등은 직권 조치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긴급 특례보증	혁신경제과	051)888-7692
피해지원센터 운영	투자통상과	051)888-4822
지방세 지원	세정담당관실	051)888-2132

3 대구광역시

① (자금지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기업 및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

- 업체별 10억원 한도, 1년간 이차보전
- 이차보전율: (5천만원 초과) 1.7%, (5천만원 이하) 2.2%

※ 당해연도 경영안정자금 수혜기업도 업체별 한도 내 추가신청 가능
(단, 당해연도 중앙부처 긴급경영안정자금 수혜기업은 신청불가)

② (특별보증) 대구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지원

■ 대상기업 :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관광업, 음식업(일식 등), 도소매업 등도 해당)
- ② 보증신청접수일 현재 대표자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기업
-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중기업의 경우 대구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천기업에 한함)

- 업체별 2억원 한도, 보증료 0.9% 고정료율 적용
- 우대사항: 보증한도사정(평가한도×130%) 우대 및 심사기준 완화, 만기도래 시 상환 없이 전액 기간연장

③ (세제지원)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지원

- 기한연장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징수유예 :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지방세징수법 §25)
- 체납처분 유예 :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105)

※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세무조사 연기 :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지방세 감면 :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가능(지방세특례제한법 §4)
- 기타 지원 : 지방세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

□ 신청방법

구분	내용
자금지원·특별보증	(신청장소)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 방문 상담신청 (구비서류) ① 신청서·피해발생사실신고서* ② 피해사실 입증서류** * 서식 다운로드: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ttg.co.kr)-서식자료실 ** 전략물자관리원의 수출규제품목평가서, 규제대상품목의 기존 거래내역 증빙자료, 계약 관련 취소여부 확인서류(관광사업체) 등
세제지원	(신청절차) 납세지 관할 구군청(세무부서)에 우편이나 팩스 및 방문 신청 ※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징수유예 등 신청서」등 제출

□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자금지원 특별보증	죽전지점	053)560-6300
	동지점	053)982-7500
	월배지점	053)639-4343
	범어동지점	053)744-6500
	유통단지지점	053)601-5255
	중앙지점	053)256-0300
지방세제 지원	중구 세무과	053-661-2374
	동구 세무1과	053-662-2374
	서구 세무과	053-663-2373
	남구 세무과	053-664-2375
	북구 세무과	053-665-2374
	수성구 세무1과	053-666-2415
	달서구 세무과	053-667-2372
	달성군 세무과	053-668-2382

4 인천광역시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대상(예상) 품목의 구매·거래 관계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 지원대책(내용)

- ① (경영안정자금) 기존 제한기준 적용 배제, 지원을 확대, 기금 상환유예 등 자금애로 해소 * 업체당 7억원 이내, 총 500억원 규모 / 이자차액 보전 2%
- ② (지방세 감면) 지방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 ③ (특례보증) 인천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 ④ (조례제정)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 ⑤ (산·학·연·관 협업 구축) 소재·부품·장비 산업 개발을 위한 기업체, 대학교, 연구기관, 시와 협업을 통한 인프라 조성
- ⑥ (간담회 개최) 일본 소재·부품·장비를 조달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예상되는 피해 범위와 대책, 지원 방안 등 현장의 소리 적극 반영

□ 신청방법

- (신청장소) 시청 TF상황실 또는 유관기관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 (구비서류) ① 신청서(소정서식) ② 피해사실 입증서류

□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종합상황실	032-440-8242~3	신용보증기금 인천지역본부	032-450-1673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32	한국수출입은행 인천지역본부	032-235-6103
인천본부세관	032-452-3632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070-8895-7447
인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32-837-7017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32
기술보증기금 인천지역본부	032-830-5680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1566-5114

5 광주광역시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원자재 조달 등 경영상 애로를 겪는 기업
-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수입기업으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구매한 기업
- 원부자재를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수출 예정기업
- *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 또는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 지원내용

- ① (특례보증)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제조업체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보증 지원
 - * 보증규모 : 200억원 내외, 업체당 3억원 이내
- ② (세제지원)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의거 직접 피해 기업에 지원
 - *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최대1년 기한연장) 세무조사유예 등
- ③ 청년채용 지원사업 참여 기업 선정 시 피해 기업에 가점 부여
- ④ 지역 내 부품소재 인력양성 강화를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부품 소재 분야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강화

□ 신청방법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 상담 문의 및 피해 접수(960-2671)
- * <https://www.sosgepa.or.kr>,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특례보증	기업육성과 광주신용보증재단	613-3861 950-0011
세제지원	세정담당관(자치구 지방세과)	613-2522
일자리 지원 및 인력양성사업	일자리정책관	613-3581

6 대전광역시

① 경영안정자금 및 구매조건 생산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 * 화이트리스트 제외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본 수출규제 품목 사용 업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 지원내용

- ① (경영안정자금) 500억원 / 은행 협력자금
 - * 업체당 3억원 이내, 기업과 은행간 약정 용자금리에 대한 2% 이자 보전(추경 예산 확보), 지원기간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②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5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 업체당 5억원 이내, 용자금리 2%내외(분기별 변동금리), 기존 대출금 사용기업에 대해 대출 만기시 최대 1년 상환유예

□ 신청방법

- (신청장소)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및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http://www.djbiz.or.kr>)에 신청(방문 및 온라인 병행)
- (신청기간) 2019. 8. 28(수) ~ 자금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① 신청서*(소정 서식), ② 피해사실 입증서류**, ③ 공통서류등
 - * 서식 다운로드: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홈페이지 (<http://www.djbiz.or.kr>)
 - ** (예시)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신고필증, 수입실적증명서, 규제대상 품목 구매실적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물품거래계약서 등

□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자금지원 총괄	대전광역시청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692
일본수출 규제 피해기업 접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6
자금지원 접수 및 상담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② 중소기업 지방세 세제 지원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

□ 지원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 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가능
- (기타 지원) 지방세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 적극 실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신청 (방문, 우편)
- (구비서류) ① 신청서*(소정 서식), ② 피해사실 입증서류**

* 서식 다운로드: 대전광역시 세정도우미 및 각 구청 홈페이지

** (예시) 지방세 지원 내용별 신청 사유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문의처

자치단체명	부서명	전화번호
대전광역시	세정과	042-270-4243
대전광역시 동구	세무과	042-251-4252
대전광역시 중구	세무과	042-606-6314
대전광역시 서구	세무1과	042-288-28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정과	042-611-2239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무과	042-608-6622

7 울산시

① 일본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반 설치·운영

□ 구성 배경

- 일본 정부의 핵심첨단 소재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조치 대비해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비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 비상대책반 설치·운영

- 운영기간 : ‘19. 8. 1.(목) ~ 상황 종료 시 까지
- 구 성 : (단장) 경제부시장, (상황실장) 혁신산업국장, 4개반
- 임 무
 - 상황관리 총괄반 (화학소재산업과)
 - 비상대책반 운영 및 종합대책 시행
 - 부품·소재 연구개발 지원반 (미래신산업과)
 - 지역 소재·부품 기업현황 조사, 중앙부처 소재부품 관련 동향 파악
 - 산업별 부품·소재 연구개발 기획·지원 등
 - 통상·산업입지 지원반 (투자교류과)
 - 대체 수입경로 발굴 지원, 해외 현지 및 국내 초청 구매 상담회 개최, 수입선 전환비용 지원사업 추진 등
 - 금융·세재 지원반 (일자리노동과)
 - 지역 기업 피해상황 파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대외경제협력 필요금융 제공
- 운영방안 : 동향관리 및 상황발생시 신속 보고

□ 문의처

비상대책반	부서명	전화번호
상황관리 총괄	화학소재산업과	052-229-7671
부품·소재 연구개발 지원	미래신산업과	052-229-6153
통상·산업입지 지원	투자교류과	052-229-2742
금융·세재 지원	일자리노동과	052-229-2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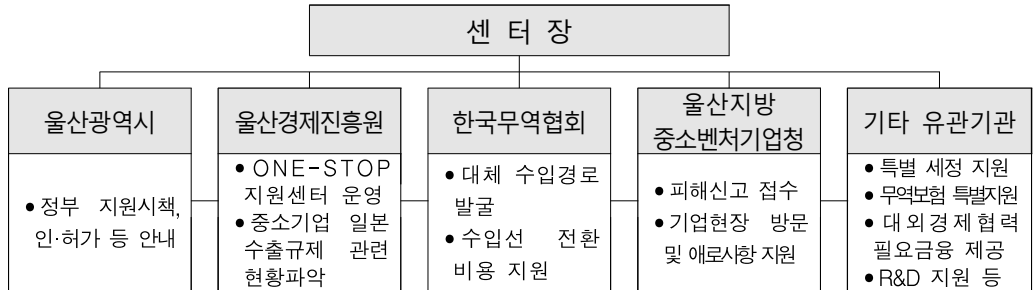
② 일본수출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센터 구성·운영

□ (목적)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 우리 기업의 수급 애로 원스톱 해결

□ (구성) 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하여 운영

시(8)	세정담당관, 일자리노동과, 중앙벤처기업과, 미래신산업과, 화학소재산업과, 투자교류과, 산업입지과, 지역개발과
유관기관(13)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울산상공회의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코트리지원단, 울산세관

□ (조직) 시, 유관기관으로 역할 분담



□ (기능) 피해기업 원스톱 해결 및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보제공

- 피해사례 접수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계
- 피해기업 지원 : 피해기업 발생시 금융·세제·자금 신속지원
- 단기 수급애로 지원 : 대체 수입경로 발굴, 수입선 전환비용 지원
- 관련품목, 일본의 수출제도, 정부 지원시책, 인·허가등 안내
→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연계

□ (시행/장소) 8.27.(화)부터 [평일(09~18), 비상시 조정], 울산경제진흥원

□ (운영방법)

- 상시(5) : 울산경제진흥원 2, 시 1,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1,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
- 상황발생시 : 해당부서 및 관련 유관기관 참석

□ 문의처 : 울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 052-283-7131

③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시책 (울산광역시)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애로) 업체

지원내용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250백만원) - 제2회 추경
 - 대체품 개발 지원(시제품제작, 특허지원, 인증·시험분석비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 수입선 다변화 경로발굴 지원(50백만원) - 제2회 추경
 - 대체 수입 상담 해외 출장 항공료·통역비, 기존 일본 수입 운송비와의 차액 물류비, 기술 라이선스료, 해외 전시·박람회 참관비(대체 수입 조사 및 상담) 지원 등
-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300백만원) - 당초예산 활용
 -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신청방법

- 울산시청, 울산TP 방문(유선) 상담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맞춤형 기업지원	화학소재산업	052-229-7672
	울산 TP	052-219-8738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지원 사업(수입선 다변화)	투자교류과	052-229-2742
	한국무역협회울산지역본부	052-287-3071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울산 TP	052-219-8647

④ 지방세 지원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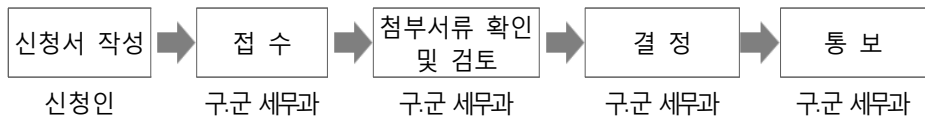
-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인하여 생산차질과 판매부진 등으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기업

□ 지원내용

구 분	주요내용	기 간	근거법령
납기연장	취득세 등 자진신고납부하는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6개월 이내 (1회 연장, 최대 1년)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징수유예	부과고지 세목인 재산세(9월 부과) 등에 대하여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 미징수	6개월 이내 (1회 연장, 최대 1년)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체납처분 유 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	1년 이내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세무조사 연 기	사업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1년 이내	지방세기본법 제83조
기 타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즉시 처리	-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에 신청기간 내 신청서 제출
- * 납기연장(기한만료 3일전), 징수유예(징수유예 신청기간 전), 세무조사연기(세무조사 15일전)



□ 문의처

지원내용	부 서 명	전화번호
지방세 지원	시 세정담당관	229-2624
	중구 세무과	290-3362
	남구 세무과	226-3521
	동구 세무과	209-3282
	북구 세무과	241-7512
	울주군 세무과	204-0522

⑤ 일본 수출규제 관련 특례보증(헤드림)

□ 지원대상

-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기업 지원관련 보증’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300억원(전국 1.2조원)

- 백색국가 제외 피해기업 지원 : 60억원(전국 2천억원) / 업체별 2억원 한도
- 경영애로기업 지원 : 190억원(전국 8천억원) / 업체별 5천만원 한도
- 저신용 영세기업 지원 : 50억원(전국 2천억원) / 업체별 3천만원 한도
 - ※ 보증요율 : 백색국가 피해기업지원(0.5%), 경영애로.영세기업(0.8%)
 - ※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16개 시도) 통해 공급

□ 신청방법

- 전화문의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각지점) 방문상담
 -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신분증

□ 문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	283-8350
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센터지점 2층	283-0101
신용보증재단 동울산지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2층	281-8100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지점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층	285-8100

⑥ 2019년 경영안정자금 용자 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서비스, 무역업 등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 1,800억원

- 지원규모 : 1,800억원(중소기업 1,150, 소상공인 450, 기술·경영혁신200)
- 지원한도 : 업체당 4억원(조선협력업체 3억원, 수출기업 5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이내
- 방 법 : 대출금리중 3%이내 이차보전금 지원
- 조 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분할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중 선택
 - '19 ~ ' 21년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용자규모 확대 추진(매년100억원씩)
 * '18년 1,700억원 → '19년 1,800억원 → '20년 1,900억원 → '21년 2,000억원

신청방법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접수기간 울산경제진흥원 방문접수
- 기술·경영혁신 자금 : 연중 기술(신용)보증기금 방문접수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접수기간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선착순

문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울산경제진흥원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1층	283-7135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2층	220-7900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4층	226-7820
울산신용보증재단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	289-2300

8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대상(예상) 품목을 ‘직접 수입하는 업체’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등)’ 100억원 지원
- (지방세 지원)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지원

신청방법

- 담당부서 전화에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업지원과	044-300-4145
지방세 지원	세정과	044-300-3512

9 경기도

①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 운영 (경기도)

□ 추진배경

-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규제 추진에 따라,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피해신고센터 운영

※ 대책반 구성 : 경기도, 경과원, 경기신보 등 (대책반장 : 경제기획관)

□ 운영계획

- (설치운영) '19. 7. 4. ~ 상황종료시 까지
- (위 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상담센터 내
- (추진절차)



- (피해기업 현장조사)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부품소재 납품기업, 완제품 수요기업)의 피해내용 및 애로사항 상담
- (애로해결) 파악된 애로내용에 대해 관련기관 합동 대응 및 해결

□ 활동계획

- 피해신고사항 발생시 현장조사, 상담, 자금지원 등 조치
- 제도개선사항 발굴 정책(정부) 건의 등

□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299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031-259-6112

②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품목 사용 업체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소재·부품"관련 산업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준용

□ 지원내용

■ 특별경영자금 용자

- 지원규모 : 100억원(운전자금 협조용자)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품목 사용 업체
- 용자조건

구분	용자한도	대출기간	이차보전율	평가점수	한도사정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5억원	3년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1.5%	운전자금 평가 50점 이상	매출액 1/2 (기존한도와 별도)

- 보증조건 : 보증비율 100%, 보증료 0.8% 고정
- 운영기간 : ' 19.7.22 ~ ' 19.12.31. (자금소진시까지)
- 담 보 : 부동산, 보증서, 기타
- 대출기관 : 농협, 우리, 신한, KEB하나, SC은행
- 용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 대출금 상환 유예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품목 사용 업체 중 기존 도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기업
- 유예범위 : 분할상환 2회차까지, 최대1년 유예(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
- 운영기간 : 2019. 7. 22일 ~ 2019.12.31.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및 온라인 접수, <https://g-money.gg.go.kr>

□ 문의처

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3023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③ 소재부품 국산화 특례보증 지원

□ 지원대상

- (시설투자) 도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관련 분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중소기업
- (운전자금) 도내 일본 수출규제 품목 사용업체
- 단, 피해기업에 대해 최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일본 등 대외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설비를 증설하는 업체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 (지원규모) 1,500억원 보증지원/ 시설투자 1,000억원, 운전자금 500억원
- (지원한도) 업체당 시설투자 30억원, 운전자금 13억원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장소) 경기신용보증재단
- (구비서류) 미정/ 준비중 (예산확보 中)

□ 문의처

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3022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④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 조성

지원대상

- 도내 중소·벤처 소재부품장비 관련기업 및 부품소재 응용 신성장 분야, 유관 ICT 등 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200억원 이상의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를 조성하여 도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투자

- 대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첨단 부품·소재를 개발 중인 도내 중소·벤처기업 집중투자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

※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등은 펀드(투자조합) 결성 후 확정/ 개별 기업 신청 불요

문의처

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302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031-259-6488

⑤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중견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업
 - *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센서, 4차산업(5G, AI, IoT, 로봇) 분야
- 일본 의존도가 높거나 국산화율이 낮은 품목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사업목적) 핵심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및 글로벌 기업에 개발된 제품 공급을 통해 도내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국제경쟁력 확보
- (부품국산화) 부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기업당 1억원 이내
 - * 기술개발 실현가능성 및 외국투자기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서류/발표심사) 선발
 - * 2019년 하반기 10개사 선발 예정
- (컨설팅)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해 적용 가능한 솔루션 제시 등 품질 및 공정개선 관련 기술적 애로 해결 지원

□ 신청방법

- 공고를 통해 신청하며,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선발
 - * '19. 9월 중 공고 예정
 - *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및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tp.or.kr

□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031-8008-2774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031-500-3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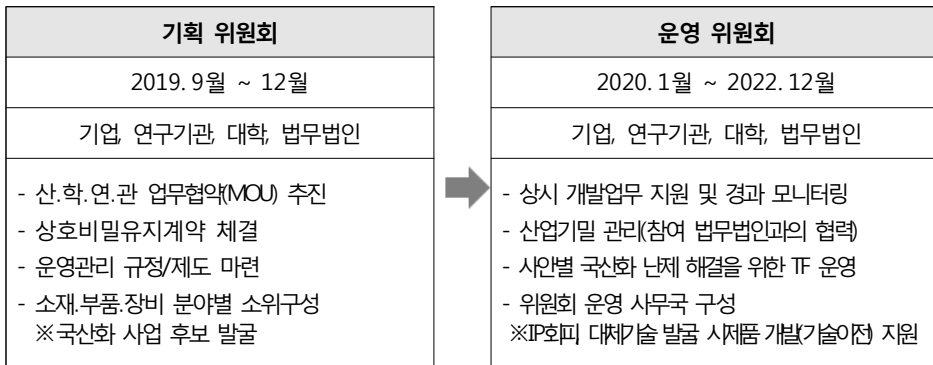
⑥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사업

□ 추진배경

- 도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공급 안전망 확보 및 국산화 기술역량 강화
 -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중심의 산학연 연계(도내 대학, 도내 기업, 연구기관 등) 사업

□ 사업단 설립(안)

- 운영기간: '20.9월~'22.12월(3년간)
- 소요예산: 300억원(연간 100억원)
- 주요내용
 - 수요기업 중심, 대·중소기업 상생 R&D과제 발굴
 - 국산화 사업 주체(산·학·연)간 신뢰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관리
 - 수요기업 자율적 사업경과 평가 및 상생적 지식재산(IP)전략 지원
- 추진체계



□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경기도청	과학기술과	031-8008-4006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술기획팀	031-888-9044

⑦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 경기도 내 '주사무소'나 '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운영 중인 기업 / 경기도 내에 위치한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내용

- 예산규모 : 100억원(도비, '19년 3회 추경 예정)
-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사업내용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약 64개 과제
 - 지원내용 : 과제 당 15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지원기간 : 1년 이내

신청방법

- '19년 하반기(9월 또는 10월 예정) 중 시행계획 공고 예정

문의처

지원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경기도청	과학기술과	031-8008-463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	031-776-4852

10 강원도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대상(예상) 품목을 직접 수입, 가공 처리하는 기업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대체품 생산·개발 등 관련 분야 기업
- 수출규제에 따른 직간접 영향 및 대일 수출입 비중이 높은 품목 및 기업

□ 지원내용

- ① 긴급 경영안정 운전자금 지원 : 지원액 60억원(기업당 8억원 한도)
- ② 만기 대출금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지원 : 4년 → 5년, 이차보전 1년 추가
- ③ 특별 신용보증 지원 : 기업당 1.4억원 한도
- ④ 수출 판로 다변화 지원 : 판촉홍보행사, 신규 바이어 발굴 등 추진
- ⑤ 공장 신·증설 인허가 기간 단축 : 대체품 생산·개발 등 인허가 신속처리
- ⑥ 세제 지원 :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및 신고 납부기한 연장(6개월 내) 등

□ 신청방법

- 강원 수출규제 피해기업 상담지원센터 신청(방문, 우편, 이메일)
 - 운영기간 : '19. 8월 ~ 상황 종료시
 - 운영부서
 - 총괄 : 도 경제진흥과 * 센터장(경제진흥과장), 운영반장(기업지원담당)
 - 지원 : 시군 기업지원 부서, 도 경제진흥원

□ 문의처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강원도청 경제진흥과	033-249-2753	pino@korea.kr
강원도경제진흥원	033-749-3314	dslee@gwba.or.kr

* 시군 기업지원부서, 중소벤처기업청·한국무역협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OTRA·산업단지공단 등의 강원지역본부를 통해서도 가능

11 충청북도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대상(예상) 품목 거래 관계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 지원내용

-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 총 150억원
- 세제 지원 : 납부기한 연장(6개월 내), 징수유예 등
- 조례 제정 :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 육성지원 조례
- 수출 거래선 다변화 및 수출촉진 지원 : 사절단, 전시회 등 참여 우대
- 간담회 개최 : 일본 수출규제 영향 기업의 분야별 애로사항 청취, 지원방안,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 신청방법

- 충북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신청(방문, 팩스, 이메일)
 - 운영기간 : '19. 7월 ~ 상황 종료시
 - 운영부서
 - 총 괄 : 도 국제통상과
 - 지 원 : 시군 기업지원 부서, 충북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무역협회

□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충북도청 국제통상과	043-220-3474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53
충북테크노파크	043-270-2310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043-236-1173

12 충청남도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

□ 사업개요

- 일본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조치 및 기타 한일 간 갈등 등으로 피해를 받아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제조업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0억 원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 700억 원,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 300억 원
- 지원대상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본 수출규제품목 사용 제조업체
 - 직접수입기업, 간접수입기업 등 한일 갈등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제조업체(피해 증빙서류 제출)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 3억원 이내,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 5억원 이내
- 지원조건 : 시중 대출 금리에서 2% 이자 지원
 - 용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신청접수 : 2019. 8. 13. ~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담보 및 신용대출)
 - 희망 은행에서 대출 가능여부 확인 → 시·군(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 신청서 제출 → 도(소상공기업과) 용자추천 승인 → 은행 대출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보증서 발급 통한 대출)
 - 신보·기보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에서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신보·기보에서 도에 용자추천 승인 요청 → 도에서 용자추천 승인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

□ 문의처 : 소상공기업과 ☎ 041-635-2223

② 충남TP 이노카페 연계 R&D기업 지원창구 운영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부품 국산화 및 대체소재 발굴 기술개발을 위한 R&D 기획 등 역량강화가 필요한 기업
 - 전문위원 상담을 통한 기업 애로해소(경영, 마케팅, 기술 등) 및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을 통한 他 사업 연계 지원

□ 지원내용

- 상담 분야 : 경영, 마케팅, 기술

전문 분야	전문위원	상담 가능 분야
경영	임채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조달, R&D지원, 조직관리 ◦ 경영일반, IPO 및 투자유치 등
마케팅	이근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전략 수립, 무역실무 ◦ 타킷수출시장 추천, 해외인증 등
기술	이근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애로기술, 경영전략 ◦ 생산관리, 정보화, 창업 등

- R&D 기획 컨설팅 : 특허분석, 산업환경분석, 종합 컨설팅 지원

□ 신청방법

- 지원계획 공고(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지원대상 선정 심의 → 대상기업 확정

□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R&D기업 지원창구 운영	충청남도 산업육성과	041-635-3926
R&D기업 지원창구 운영	충남TP 기업지원단	041-589-0634
R&D기업 지원창구 운영	충남TP 미래산업기획연구단	041-589-0171

13 전라북도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입하는 중소기업
- 일본 수출규제 대상 품목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금융지원)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 이차보전, 융자금상환 유예조치 등
 -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 총 150억원 규모
 - 지원금리 : 2차보전금 2.0% 지원
- (지방세지원)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부지원
- (원·부자재 수입선 발굴지원) 도내 제조기업에 원·부자재 수입선 발굴지원으로 수출 활성화를 유도(20부터)
 - 해외거점파트너 활용 사전 시장조사를 통한 수입업체 매칭, 사전 현지공장 실사를 위한 출장비 지원 등
- (수출 판로 지원) 수출 다변화를 위한 수출상담회, 전북형 수출바우처사업 등

□ 신청방법

- (금융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피해사실 입증서류**
 - (지방세지원) 전라북도 14개 시·군 신청
 - 구비서류 : 피해사실 입증서류**
- * 서식 다운로드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jbba.kr>) 자금지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 ** 일본소재 수출업체의 개별허가 신청서 사본, 규제대상품목의 기존 거래내역 증빙자료(계약서 등), 제3국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

□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비고
금융지원	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	063)711-2050	
지방세지원	도청 세정과	063)280-2315	

14 전라남도

- 지원대상 : 日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확인 또는 피해예상 기업
 - 對日 수출실적이 전년도(또는 최근 3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거나 日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취소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
- 지원내용
 - (대체 시장 발굴)
 - (해외 특별 판촉) 농수산식품 일본 수출 감소로 곤란한 수출기업 대상 판촉행사 추진(1.3억원, 4회)
 - (마케팅 활동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판촉 등 수출기업의 상황에 맞는 마케팅 지원(3억원, 10개 기업)
 - (금융 지원)
 - (담보한계 특례보증) 담보부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수출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수출 유지 지원(45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500억원, 기업당 3~5억원, 대출금 이자 지원 2.5%~3.0%, 2년 거치 일시상환, 기존 경영안정자금 상환 유예(1년)
 - (농어촌진흥기금) 개인 1억, 법인 2억 / 이율 1%, 2년거치 일시상환
 - (녹색축산육성기금) 농업인·법인 2억 / 이율 1%, 2년거치 일시상환
 - (수출보험료 추가 지원) 일본 수출기업 보험료 지원 한도 확대(300 → 500만원)
 - (지방세 지원) 지방세 신고기한 연장 1년, 지방세 징수유예 1년, 세무조사 연기
- 신청방법 : 지원사업별 문의처에 문의
-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대체 시장 발굴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286-2452
긴급경영안정자금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288-3831~2
농어촌진흥기금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286-6231
녹색축산육성기금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286-6523
수출보험료 추가 지원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286-2454
지방세 징수 유예	전라남도 세정과	286-3621

15 경상북도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핵심 소재·부품 제품화 및 상용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

- ① 일본 수출규제·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②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 대체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시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 ③ 핵심 소재·부품 관련 제조기술의 제품화, 상용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19년 9월 ~ 자금소진시까지 * 추경예산 수립후
- (지원내용) 융자금의 대출이자 일부(3%)를 1년간 지원
- (융자한도) 총 1,000억원(은행협력자금), 기업당 5억원(우대 7억원) 이내
- (지원절차) 신청·접수(시·군) → 융자추천 결정(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심사·대출실행(협력은행) → 이차보전금 지급(도→은행)

□ 신청방법

- (접 수 처) 경북도내 관할 시·군청 자금지원 부서
 -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피해사실 입증서류 등
- * 세부사항은 '19. 9월 이후 홈페이지(www.gb.go.kr) 고시공고 게시판 참조

□ 문의처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자금지원 총괄	경북도 중소벤처기업노동과	054-880-2681
접수상담 및 안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자금지원팀	054-470-8570

16 경상남도

□ 지원내용

①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규모 : 300억원
- 지원대상 : 도내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의 공장등록업체 중 ' 19. 7. 1. 이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업체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2억원 이내(10억원→12억원, 2억원 확대)
- 이차보전 : 2.0%/년
- 상환기간 : 3년(2년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
- 조건완화 : 부채비율 150%미만 기업 지원 가능, 한도범위 내 대출 횟수 제한 없음, 대환처리허용

② 이차보전 지원기간(최대1년) 연장

- 지원대상 : '19. 7. 1. 이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기업으로서 기존 경영안정자금 사용 업체 중 최근 3년 이내 대일 매입 실적이 있는 업체
- 지원내용
 - 도 육성자금 대출만기(거치기간) 연장 및 원금상환 1년 유예
 -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 신청방법

- 접수처 : 13개 시중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Sh수협은행

- 신청기간 : 2019. 8. 12. ~ 자금 소진 시까지

□ 문의처

지원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	경상남도 경제기업정책과	055-211-3384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055-211-5144

③ 일본수출규제 직접피해 기업 세제(지방세) 지원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내용

- (기한연장)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6개월 범위 내 연장(납부에 한정함)
 -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 징수 등 징수유예 6개월 범위 내 유예
 -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범위 내 유예 가능(지방세징수법 제25조)
- (체납처분 유예) 압류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 유예
 - 추가 연장 시 최대 2년* 범위 내 유예 가능(지방세징수법 제105조)
 -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한함
-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지원
 - ※ 부과체적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지방세기본법 제83조)

신청방법

- (신청장소)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 (구비서류) ① 신청서*(소정 서식), ② 피해사실 입증서류**
 - *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 ** (예시) 관련업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

문의처

시군명	전화번호	팩스	시군명	전화번호	팩스
창원시	055-225-2915	055-225-4714	함안군	055-580-2143	055-580-2149
진주시	055-749-8195	055-749-5259	창녕군	055-530-1263	055-530-1270
통영시	055-650-4312	055-650-4399	고성군	055-670-2256	055-670-2259
사천시	055-831-2860	055-831-6027	남해군	055-860-3175	055-860-3705
김해시	055-330-3483	055-330-3489	하동군	055-880-2275	055-880-2279
밀양시	055-359-5123	055-359-5733	산청군	055-970-6203	055-970-6209
거제시	055-639-3486	055-639-3439	함양군	055-960-4888	055-960-5713
양산시	055-392-2193	055-392-2199	거창군	055-940-3233	055-940-3219
의령군	055-570-2304	055-570-2309	합천군	055-930-3123	055-930-3129

별첨1

소재·부품산업 대상업종 - 산업은행

소재·부품산업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에서 생산하는 소재·부품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재료 및 가공방법, 해당 소재·부품을 사용하는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그 새로운 유형의 업종을 위 표에 열거된 어느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